

제346회국회  
(정기회)

##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21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22.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21. 아동수당세법안(계속)
222. 청년세법안

### 상정된 안건

|                                                     |    |
|-----------------------------------------------------|----|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1 |
|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1 |
|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  | 11 |
|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  | 11 |
|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  | 11 |
|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  | 11 |
|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  | 11 |
|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  | 11 |
|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  | 11 |
|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 | 11 |
|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1 |
|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1 |
|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 | 11 |
|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1 |
|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2 |
|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   | 12 |
|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   | 12 |
|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  | 12 |
|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  | 12 |
|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  | 12 |
|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    |
|----------------------------------------------------|----|
|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 | 12 |
|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 | 12 |
|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 | 12 |
|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 | 12 |
|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 | 12 |
|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 | 12 |
|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 | 12 |
|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 | 12 |
|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                | 12 |
|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 | 12 |
|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 | 12 |
|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 .....     | 12 |
|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 .....     | 12 |
|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2 |
|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  | 12 |
|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2 |
|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 | 12 |
|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 | 13 |
|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 | 13 |
|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 | 13 |
|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 | 13 |
|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 .....     | 13 |
|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 .....     | 13 |
|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 13 |
|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3 |
|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    |
|----------------------------------------------------------|----|
|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 | 13 |
|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 | 13 |
|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 | 13 |
|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 | 13 |
|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 | 13 |
|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 | 13 |
|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 | 13 |
|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 | 13 |
|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                | 13 |
|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3 |
|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        | 13 |
|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      | 13 |
|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      | 13 |
|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    | 13 |
|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    | 13 |
|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    | 13 |
|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3 |
|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                   | 14 |
|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 14 |
|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4 |
|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4 |
|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4 |
| 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4 |



|                                                        |    |
|--------------------------------------------------------|----|
| 11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20.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1) .....       | 14 |
| 12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5) .....       | 14 |
| 12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4 |
|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4 |
| 125.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   | 14 |
|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   | 14 |
|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  | 14 |
|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  | 14 |
|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  | 14 |
|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  | 14 |
|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  | 14 |
|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  | 14 |
|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  | 14 |
|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  | 14 |
|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  | 14 |
|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 | 14 |
|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 | 14 |
|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4 |
|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 | 14 |
|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 | 14 |
|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 | 14 |
|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 | 14 |
|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 | 15 |
|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 | 15 |
|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 | 15 |
|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 | 15 |
|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 | 15 |
|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 | 15 |
|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 | 15 |

|                                                        |    |
|--------------------------------------------------------|----|
|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 | 15 |
|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 | 15 |
|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 | 15 |
|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 | 15 |
|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 | 15 |
|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 | 15 |
|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 | 15 |
|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 | 15 |
|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 | 15 |
|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 | 15 |
|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 | 15 |
|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 | 15 |
|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 | 15 |
|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 | 15 |
|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 | 15 |
|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 | 15 |
|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 | 15 |
|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5 |
|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 | 16 |
|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 | 16 |
|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 | 16 |
|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 | 16 |
|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 | 16 |
|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 | 16 |
|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 | 16 |
|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 | 16 |

|                                                           |    |
|-----------------------------------------------------------|----|
|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 .....        | 16 |
|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 .....        | 16 |
|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 .....        | 16 |
|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 .....        | 16 |
|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6 |
|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                       | 16 |
|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6 |
| 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 16 |
|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22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                       | 16 |
| 22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                             | 16 |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5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제49항 및 제50항, 제69항부터 제71항까지, 제89항, 제108항 및 제109항, 제120항 및 제121항, 제206항부터 제209항까지, 제214항 및 제222항 등 총 17건은 이미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과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유사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하여 함께 심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림 위원이 지난번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질의하신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시에 함께 논의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지난번 회의에서 심사하다 보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발의)(계속)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5)(계속)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3)(계속)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8)(계속)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5)(계속)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0)(계속)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92)(계속)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68)(계속)
1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2)(계속)
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1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7)(계속)
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1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0)(계속)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계속)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3)(계속)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33)(계속)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96)(계속)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계속)
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13)(계속)
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56)(계속)
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96)(계속)
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 대표발의)(계속)
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97)(계속)
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12)(계속)
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21)(계속)
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5)(계속)
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1)(계속)
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08)(계속)
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9)(계속)
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1)
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87)
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계속)
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의)(계속)
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321)(계속)
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계속)
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62)(계속)
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75)(계속)
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3)(계속)
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48)(계속)
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2)
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53)
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7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53)(계속)
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42)(계속)
7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7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6)(계속)
8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3)(계속)
8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98)(계속)
8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8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8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4)(계속)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77)(계속)
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00)(계속)
8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9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계속)
9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계속)
9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4)(계속)
9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9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9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17)(계속)
1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계속)
10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5)(계속)
10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84)(계속)
10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0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1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1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10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1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계속)
11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15.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7.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18.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19.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20.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01)
121.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75)
122.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
1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125. 조세법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1)(계속)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계속)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59)(계속)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3)(계속)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계속)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51)(계속)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1)(계속)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계속)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7)(계속)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4)(계속)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2)(계속)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59)(계속)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10)(계속)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0)(계속)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계속)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04)(계속)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1)(계속)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18)(계속)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2)(계속)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82)(계속)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51)(계속)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75)(계속)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0)(계속)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92)(계속)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0)(계속)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21)(계속)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1)(계속)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0)(계속)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3)(계속)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24)(계속)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732)(계속)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국) 의원 대표발의)(계속)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21)(계속)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37)(계속)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7)(계속)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63)(계속)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91)(계속)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41)(계속)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4)(계속)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계속)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계속)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4)(계속)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6)(계속)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77)(계속)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윤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419)(계속)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계속)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54)(계속)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계속)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20)(계속)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31)(계속)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798)(계속)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18)(계속)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36)(계속)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11)(계속)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921)(계속)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199)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29)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2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계속)
21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
21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21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1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18.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계속)

21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220.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221. 아동수당세법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계속)
222. 청년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10시06분)

○소위원장 이현재 의사일정 제1항 오세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22항 정세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세법안까지 이상 22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Ⅲ-1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 기타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Ⅲ-1 자료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정부안이 너무 간략하다고 해서 지난 주말에 전문위원이 추가로 내용을 좀 보완해서 설명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합병 시 중복자산 처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해상운송업·선박건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하였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과세를 이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근 해운업,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시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검토의견이 그냥 이렇게 한 줄



로……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간단한 내용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한 건씩 쪽 되어 있던 것을 검토 의견을 조금 더 붙인 겁니다. 이견이 많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자세히 정리된 것이고, 간단간단히 정리됐다고 한 내용이 그겁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정부에서 간단하게 추가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주로 업종이 유사한 법인들끼리 합병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합병을 하다 보니까 중복자산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합병을 한다 그러면 점포나 이런 것이 비슷한 것이 많을 것이고요, 건설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종이 유사한 법인이 합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중복자산이 생기니까 지금은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처분한 다음에 또 다른 재산을 대체취득할 때만 과세이연이 3년 거치 3년 분할해서 이입된 것을 산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은 뭐냐 하면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지 않더라도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이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취지는 뭐냐 하면 최근에 전반적으로 업종이 불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에 바로 신규 투자하라고 하기가 좀 그런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규 자산의 대체취득 요건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합병을 하는데 비슷한 자산이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합병을 하면 이것이 중복되니까 그 중에 하나는 판다 그럴 때 과세이연을 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현행에 있던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다라는 것들 중에 하나를 팔고 나서 또 새로운 것을 취득한다는 의미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그 요건을 없애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세액감면제도 보완입니

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공장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감면을 중단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견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십시오.

○전문위원 조의섭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수협법상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9~12%의 저세율을 적용하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적용법인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농협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형평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관련법 정리하는 것이니까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법인 추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 법인에 국제경기대회지원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로서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조직위원회를 추가하고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포털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 등을 대상 법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기지원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형평상 타당하다고 보입니다만 기재부장관이 고시하는 것보다는 법률이나 최소한 대통령령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은 지속할 측면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비영리법인의 자생력을 강화해서 정부의 지원 없이도 고유목적사업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실제로 어떤 것이 돼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엑스포하고 올림픽하고 이런 것인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기존에는 국제경기대회가 개별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金光琳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조직위원회로서’ 할 때 그때 생각한 것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하듯이……

○전문위원 조의섭 5페이지에 나와 있는 FIFA U-20, 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그것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는 국제경기대회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렇게 대회만 열거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정 대회는 열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재부에서 고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추가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닙니다. 이것은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내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어느 도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 특정 명칭이 생기면 그 명칭을 기재부에서 고시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아, 대회 유치할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도……

의견 있으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나는 이것은 반대예요. 왜 반대냐?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이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어찌 보면 지자체의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또

끝난 다음에는 시설들이 오히려 유후시설로 난립되고 심지어는 애물단지 같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별…… 어떻게 보면 재정 낭비의 케이스 비슷하다고. 이렇게 해 줄 필요 없어요. 이런 것은 창원이 하면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대 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세제 혜택까지 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무주택 창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의 근로자 복지 증진시설을 취득할 경우 세액공제액을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박주현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에는 무조건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 경우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은 무조건 안 된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에 예를 들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주는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성은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감세를 할 정도로 필요성이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중소기업입니다. 통과’ 이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이 조금 더 크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액공제나 세액공제를 확대할 때는요.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근로자 기숙사라든지 임대주택, 직장어린이집 이런 시설을 기업이 취득할 때 세액공제를 해 줌으로써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

도가 되겠는데……

○박주현 위원 지금 7%인데요, 그것을 10%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7%인데 직장어린이집이나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10%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현행 지원 수준 10%로 올려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현재 되는 것이 직장어린이집하고 어디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옆에 보시면……

○박주현 위원 수도권 밖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이현재 거기가 10% 되니까 여기도 10%로 지원해 준다 이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은 다 10%로 올려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박광온 위원 좋습니다. 저는 생각 같아서는 더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동의해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합의됐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리츠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공모리츠가 전체 리츠 수 125개 중 3개에 불과함에 따라 공모리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미국·일본·홍콩 등도 공모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기재부에서 예를 들어 금융을 활성화한다든지 출자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다가 잘 안 되면 거기에 세제 혜택을 막 갖다 붙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연주 위원께서 ‘마약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도록 하면 그 단기적인 이익이 없어지면 바로 그 부분이 와해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근거와 정상적인 이유에 의한 사업 진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됨으로 해서 왜곡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담이고요.

그래서 정말 큰 이유가 없다면 잘 운용되지 않는 일반…… 그러니까 민간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기재부가 이것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서 활성화되기를 바랐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됐으니 세제를 붙입시다, 감세 혜택을 붙입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공모리츠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재 상장 리츠가 3개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3개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자 그런 얘기인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앞으로 공모리츠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내국법인들이 부동산 같은 거 가지고 있지 말고 이런 공모리츠에 출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공모리츠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고요. 외국에도 이런 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과세특례, 감면 이런 것을 줄여 나가자는 게 정부 정책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본 세율은 그냥 가만두더라도 감면 폭을 줄여 가지고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자, 지금 그런 게 전반적인 정부의 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도록 자꾸 예외를 만들어 가지고 과세특례를 주는 게 바람직하냐?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착실하게 하세요. 한쪽에서는 없애면서 한쪽에서는 해 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것은 직접적인 감면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리츠에 출자를 하면 그때 과세를 하지 않고 나중에 출자로 취득한 주식 팔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그냥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활용이 안 되는데 이런 리츠에 출자를 해 가지고 활용도도 높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감안해서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자……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대개 정부안들을 보면 정부안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의견들이 현장에서 올라와서 또 관련 업계의 요구가 아마 쌓이고 쌓여서 보통 이런 정부입법안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사안별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또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마 아주 자발적인 의사에서 나온 것보다는 굉장히 현장감 있는 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같은 경우에 정책적인 그런 측면을 공감했기 때문에 이 안이 올라왔다고 보고, 정부가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대개 경험상으로는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참 힘들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장님,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리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께서 자산 보유를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잖아요? 금융자산을 적게 보유하는데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보다 공모리츠라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 간접투자의 수단을 국민들한테 열어 주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펀드보다는 리츠라는 게 훨씬 더 투자자의 안정성이 여러 가지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 공모리츠에 대해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추가 말씀하세요?

○**박주현 위원** 다시 검토하실 때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게, 어쨌든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특례를 준다는 것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측면,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것에 그동안, 특히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경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쪽 오던 흐름이, 사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관성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물출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때 가서 양도차익을 과세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아닐 가능성, 그렇게 하는 경우에 감세가 상당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현물출자할 때 그 당시에 출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을 팔게 해서 거기에서 양도차익을 거두고, 그다음에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정부로서는 그게 단순하고 정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A라는 부동산이 지금 10원에서 100원으로 10배를 뛰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팔자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에다 출자하는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라는 트랙을 탐으로써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공모리츠 많이 하시라고 하라고요. 거기에 왜 세금을 갖다 붙이냐는 겁니다. 공모리츠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모리츠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하고 세제를 붙이고 해야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세제에 대해서 비과세·감면 줄이는 거 찬성하고, 그다음에 신설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도 찬성하고.

그런데 늘 논의를 할 때 신설하는 경우에 기존 세원을 까먹는 것하고 기존 세원을 까먹지는 않는데 장래에 들어올 세수를 줄여 주는 것하고 또 세수를 줄여 주는 방법도 세액공제를 해서 줄여 주는 것하고 이연을 시켜서 나중에 받는 것하고, 이런 것을 조금씩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 소위에서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이 리츠제도 자체는 꼭 어느 특정 정부에서 한 게…… 과거 정부부터 해 왔고 이렇게 쪽 해 온 건데 125개 중에서 3개는 이렇게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땅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리츠에 넣어 가지고 양도차익이 생기는 것을 이연해 준다 하는 것하고, 팔아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 안 팔고 안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비교형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전혀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연 시켜서라도 장래에 세수가 들어오게 하고 조금은 투자 활성화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김광림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숫자로 체크해서, 여기 세수 효과도 추정 곤란 그랬는데 이런 가능성,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재논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운소득에 대해서 선박 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표로 하는 톤세제도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특례 적용 포기를 2017년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제도 도입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박주현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지

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17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주현 위원 17년이 속하는 연도까지 포기한다는 거면 이때까지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내년 말까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정부가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본 거지요? 그렇지요? 원래 톤세 이것을 포기한다, 어려우니까?

○金光琳 위원 포기하는 게 기업이 유리하다고……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시면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현행 마이스터고등학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비용,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 현장훈련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1년 이후 마이스터고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세수감면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몇 개 학교가 대상인가요? 대학교가 대상인데 이게 1억밖에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학교는 제한이 없는데 대학이나 마이스터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 기업들이 예를 들면 맞춤형 과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학에다가 그런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그때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현장훈련수당……

○박광온 위원 현재 마이스터고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학교가 아니고요, 기업이 여기에 지원할 때.

○박광온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전 교육기관과 전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1억 원이면 이런 제도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팬히 복잡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정부도 그거 행정비용 출연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거 체크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이거 체크하고, 사실상은 작동이 안 되는데, 그러면 정비를 하든지 제대로 되게 만들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가 산학협력 차원에서 기업이 대학에다 자기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과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한 1억밖에 안 되지만 기한을 연장해서 이런 제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주현 위원 언제 만들어졌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처음에 08년에 도입이 됐다가 대상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방대학만 하다가 모든 대학으로 넓히고, 맞춤형 학과 설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그 대상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박주현 위원 넓혔는데 1억 원이 됐다는 것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넓힌 게 작년에 넓혔습니다.

○박주현 위원 좋은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산학협력해서 HRD를 맞춤형으로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진짜로 작동이 되게 뭔가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세감이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1억이다, 그러면 이거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 제도를 내세워서 정부는 이렇게 ‘기업과 정부와 학교가 협력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리스트만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것 저는 차라리 없애 버리고 이런 거 열심히 들여다볼 시간에, 기업이고 학교고 정부고 이런 거 막 들여다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1억에서 1억 5000으로 늘릴 것인지 이런 거 하고 있을 사이에 그 에너지를 제대로 된 산학협력 맞춤형 HRD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착시키고 거기에 재정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작

동하게 하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세제실장이 설명드렸듯이 일단은 이게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 때문에 지금 수요가 있는 것을 그만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께서도 이 자체 반대보다는 이게 실익이 있느냐는 측면이고, 그런데 기업이 자꾸 유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특히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많이 주문하는 겁니다.

○박주현 위원 교육부가 하는 일 하나도 없으면서 이런 것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것 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척 하는 걸 없애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에요, 저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별도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박주현 위원님께서도 취지에 동의해 주시는 거니까 이것은 합의해 주시고 위원님께……

○박주현 위원 아니요, 합의하지 말고요. 교육부에게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확실한 어떤 앞으로의 플랜을 만들어서 내라, 이런 정도로 압박을 하세요. 적어도 지금 한 보름간이라도 압박을 하셔서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金光琳 위원 박 위원님께서 이것은 교육부에다가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것은 사실은 보면 1억 원 하는 게 추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마이스터고하고 대학에다가 훈련수당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설비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세액 공제해 주는 건데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대기업이거든.

대기업의 세액공제가 1%예요. 위에는 2~3%고, 이렇게 때문에 아마 대기업에서도 이거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중

간에 그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세제실에서 세수추계가 좀 잘못됐을 수도, 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부에다가 대기업하고, 또 중소기업은 7~8%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박주현 위원 아니, 여기에서 또 무슨 대기업 예외 만들어 가지고 10%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金光琳 위원 아니, 현재 되어 있는 게 대기업이 이렇게……

○박주현 위원 아니, 1%잖아요.

그런데……

○金光琳 위원 그것을 더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세수추계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교육부가 별로 신경 안 쓸 수가 있는데 교육부가 좀 더 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을……

○박주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산학협력 맞춤형 HRD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합의를 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의를 안 하고서 교육부한테 그것을 해야 뭐라도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합의 안 됐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플랜을 내시고 설득을 좀 더 하는 조건으로 이게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포기할 수 있다니까요. 포기하면 더 이상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해 줄 필요가 없고요.

거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런 플랜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시드머니 역할을 하니까 해 주십시오’ 했을 때 비로소 합의를 해 줘야지 여기서 합의해 주면 교육부가 미쳤다고 여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내놓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소위에서 강하게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교육부에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합의를 전제로 재논의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특별 플랜을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 합의하지 말라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지지요.

○박주현 위원 합의해 주면 안 된다니까요. 부

처를 잘 모르십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재논의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장애인 운동경기부 운영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 취지는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지요? 최순실…… 이거 굉장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는 논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도.

○이종구 위원 그럼시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박주현 위원 아니, 계류로 빼 버리세요. 왜냐하면 좋은 취지가 지금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종구 위원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서 해야 돼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5페이지입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 대상 조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공제 대상자에 현재 석유제품 공급자 외에 매수자를 추가하고 매수가격의 0.2%를 공제하고 공급자에 대한 공제율은 현행 0.3%에서 0.1%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재 매도자 중심으로 설계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주유소 등 매수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센티브 부여를 통

해 최종 소비자에 대한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동 제도가 2012년 도입되어 2년간 연장되었는데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있기 때문에 적용기간 연장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게 공급자에 대해서 0.3%를 공급자, 매수자로 이렇게 0.1, 0.2로 갈랐는데 세감이 발생하는 것은 매수자 쪽에서 내던 세금이 더 커서인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일몰 연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몰을 연장하는……

○박주현 위원 아, 이거 자체가 34억이라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강화하는 거 아니에요, 주유소도 포함시켜 가지고?

○박주현 위원 아니, 강화된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매수자 쪽으로 좀……

○소위원장 이현재 더 확대하는 거지요?

○박주현 위원 그냥 일몰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자, 그러면 합의해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용 대상 확대입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구역 사업 시행자에 새만금 사업지구를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합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구 및 오송에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입주 진행 중이고 지원실적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 특구단지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으레적으로 지원을 연장해 왔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특히 이것은 뭐냐 하면 2013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 기업들이 입주가 덜 됐습니다. 아직 입주 중에 있는 초기 단계라서 그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기한을 좀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이것은 사실 그때 이 자리에서 절대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고 금년까지 한 건데 연장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은 기업도시……

○金光琳 위원 지금 연장하는 경우에도 어떤 것은 2년 연장하고 어떤 거는 3년 연장하는데 특별히 뭐가 있나요? 이것은 거의 될 것 같은데, 조금 입주가 덜 되고 하니까 좀 연장하고 연장하고 이런 건데 이것은 왜 갑자기 3년 연장하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은 기업도시 그쪽이고요, 이거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거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감면할 때는 원칙은 2년 또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한……

○金光琳 위원 2년짜리가 많았거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주기를 좀 더 빨리해서 저희들이 재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들은 2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단지가 승인이 됐는데 입주해서 실제 사업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3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金光琳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더라도 기업도시와 마찬가지로 절대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굵은 글씨로 속기록에 좀 남기고, 정말 이것은 연장하지 말도록…… 그것은 연장 안 한다고 해야 기업도시가 들어와요. 틀림없이 연장될 거다 하면 또 천천히 천천히 들어오거든.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이게 지금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감면하는 엄청난 혜택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년이 통상적이라면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부 합의라도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지방에 대한 일반적인 혜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각종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서 실제 기업들을 입주시키고 가동을 하기까지 지방정부로서는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구나 오송도 마찬가지인데 수도권에 기업이 입주하는 것하고 지방에 입주하는 것은 기업들이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조건도 다르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장려하는 측면이니까 이것을 2년 이내에 하라고 이러면 그만큼 또 이 활용을 지방정부에서 하기가 힘든 거지요. 그래서 이왕 그런 뜻을 가진 것 같으면 2년이든 3년이든 지 시간을 충분히 줘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그 세수 효과가 저는 추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이 단지가 조성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3년 11월에 일단 시설만 준공이 됐는데……

○박광온 위원 입주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 후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총 승인받은 게 33개인데요, 현재까지 7개만 입주가 되어 있고 아직 나머지 24개가……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입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013년 11월에 시설은 준공됐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7개만 입주가 됐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7개만 입주가 된 상황입니다.

○박광온 위원 7개가 입주되어서 거기서 세수 효과가 어떤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건 일단 소득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박광온 위원 아직도 안 나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왜냐하면 통계가 또 15년에 입주되어서……

○박광온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할 때 3년 안에 몇 개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계획을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 근처라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게 과거의 제조업들, 전통산업들이 단지에 들어오는 거랑 달라 가지고 이게 회임기간도 좀 길고요. 그다음에 성장산업이니까 시간도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것은 이번에 글로벌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나빠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해 주시고요. 단지 이것은 다음번에는 확실히 해 가지고 연장이 없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은 사실은 첨단복합단지가 대부분 지방이니까 기업들 수익성, 여러 가지 때문에 안 가니까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제도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주현 위원님, 김광림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지만 이걸 3년을 그냥…… 기업이 수익이 있어야 가는 거니까, 인센티브 차원이니까 해 주되 우리가 정부에서도 이것은 추가 연장은 안 한다 하는 단서를 분명히 달고 3년으로 동의해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박주현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합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정부, 한마디 하십시오, 추가 연장은 없다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3년 후에는 추가 연장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합의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오케이.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2018년까지 현행 주식 80% 이상 배정에서 70% 이상 배정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합병 대가 중 주식교부 비율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므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도요, 80에서 70으로 되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 ‘그럴 경우에 약간 이런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더 강화한다면 모르지만 완화할 때는 어쨌든 세감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해 주세요. 왜 하필이면 70%냐, 왜 80%에서 하필이면 10%……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합병에는 대가를 주식으로 80% 이상을 받아야 어떤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소위원장 이현재 그 경우 왜 80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외국의 사례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금으로 오는, 현금이 많으면 회사를 합병해 가지고 회사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최소한 주식 비율이 한 80%쯤 되면 회사가 어떤 양도가 아니고 일종의 조직 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재편계획 같은 경우는 어떤 선제적 사업 구조조정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최 실장님, 왜 10%p 내렸느냐, 왜 70이나 하는 그것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소위원장 이현재 핵심만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게 선제적 사업재편계획인데 과잉공급 분야의 어떤 자회사를 합병을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가급적 현금을 새로운 신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의 그것

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산업에 투자하려면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주식 비율을 10% 낮춰 주면……

○소위원장 이현재 왜 60은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면 일반 합병과의 차이가 너무 커지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아시겠지만 기활법이라고 기업 활력 제고법을 저희가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이런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지금 문제는 기업이 문제가 생긴 뒤의 구조조정이 문제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을 활성화하자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업들의 의견도 들어 봤더니 이 부분의 기업 활력 제고법이 통과되면서 그런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의 요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80%가 원칙이지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에 따라서 사업재편계획,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에 따라서 주무 부처 승인을 받는 그런 사업재편계획……

○소위원장 이현재 최 차관님, 그것을 엄격하게 하는데 왜 70이나 이거지. 왜 80%에서 10%p냐 그 점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80에 대해서는 산업부하고 기업에서 이걸 70% 정도로 낮춰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구조조정 촉진, 사업재편 촉진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동의해 주시지요?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특례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이것은 현행 70%?

○소위원장 이현재 예.

○金光琳 위원 원래 30%, 50%, 70%에서 80% 짜리는 나는 처음 보네.

○박주현 위원 일반적인 합병이 아니라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그러니까 사실 약간 특례를 주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 세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인데……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간단한 것인데 한 가지만 여쭙 볼게요.

익금 및 손금 증가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한다는 게 어떤 얘기지요? 손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뭐냐 하면 세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계좌를 통해서…… 손금이라는 것은 취득 가격입니다. 익금이라는 것은 판 가격이고요.

○박주현 위원 전체 계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이 계좌의 거래금액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설명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2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 인정 한도를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2016년까지 특례를 주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2년 연장하여 2018년까지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수 감소가 약 7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만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한시적 증액이었으면 한시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것이 접대비 한도를 늘려 준 것인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

○박주현 위원 아니, 어려우면 2400만 원이 아

니라 8000만 원까지 해 줘야지요.

저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항상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책이 먹히려면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측면이고, 접대비라는 것을 늘려 달라고 얼마나 많은 데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접대비로 떼갈 수 있으면, 그것이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에 2년 한 것입니까, 3년 한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2년 했습니다.

○박주현 위원 2년이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어떤 선물을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이번에 되면 제가 볼 때 더 이상 다시 못 돌아갑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이종구 위원님 하세요.

○엄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접대비 지출비용은 한도액보다도 많고, 이것을 대부분 손금 부인해서 익금으로 산입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한도를 쭉 적용하다가 줄이는 것은 그만큼 예측하지 못한 세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물론 김영란법 등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이런 접대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접대비는 상당 부분 부인당해서 익금에 넣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생각해서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하시고요.

○이종구 위원 접대비 한도 인상하는 것은 저의 평소 소신입니다. 접대비는 한도를 둘 것 없이 오히려 늘려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중소기업자들하고 법인카드를 쓰시는 여러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거의 반 수준으로 접대비 소진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김영란법 가지고 부패가 척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부패 스캔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김영란법은 별로 관계가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상처에다가 그냥 반창고 붙이는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부패구조를 청산하려고 그러면 다른 것,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철폐해야 된다는지 이런 쪽에 해야 되거든요. 이것

하고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봐서는 이 부분은 한도를 늘리는 게 별 효과가 없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접대비에 대해서 명을 두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종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김영란법의 긍정적이고 정말 필요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농수축산물이나 음식업이나 여기에서 현재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접대비가 줄어드는 상황임이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렇잖아요? 법인카드를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 제한 때문에 3만 원 이상을 못 쓰고 또 가능하면 만남을 자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 한도를 계속 유지하면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채우는 편법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만약에 정말 접대비를 늘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냥 공식적으로 늘리시고요. 한시적으로 늘린 것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은 좀 아니고, 이것을 일단 끊고 나서 농수축산업이나 음식업자에 대한 다른 지원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하시고, 엄용수 위원님 하십시오.

○박광온 위원 접대비를 지금 무슨 기준에서 정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접대비는 기본 금액이 있고요 또 플러스 매출액의 영점……

○박광온 위원 기본 금액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일반 법인이 1200만 원인데……

○박광온 위원 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1200만 원 플러스 매출액의……

○박광온 위원 몇 %?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누진으로 해 가지고 0.2, 0.1, 0.05……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전체 기업의 접대비에서 손금 18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돼

요? 100억 매출이면 얼마 정도가 접대비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00억이면 중소기업은 4400만 원입니다.

○박광온 위원 연 접대비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한도가요.

○박광온 위원 손금 한도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광온 위원 그러면 접대비는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접대비 한도가요, 매출 100억이면 4400만 원이 접대비 한도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손금 1800만 원이 들어가면 6200만 원이 되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요, 합해서요. 4400만 원 중에 1800만 원이 기본 한도다……

○박주현 위원 지금 이것을 600만 원 올려 줬다가 만약에 1800만 원으로 다시 내렸을 때 4400만 원이라는 것이네요?

○박광온 위원 저는 이종구 위원님 견해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영세 외식업 하는 분들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용수 위원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올라 봤자 한도액이 600만 원 차이지요. 600만 원 차이 같으면 예를 들면 법인세 10% 적용한다면 60만 원이고 20% 같으면 1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도 아니고 손금 산입 한도를 늘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수추계액도 이렇게 몇백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혜택을 중소기업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고 또 이미 이 정도는 손금 산입이 된다고 기본적으로 누려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김영란법이나 부정부패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또 반대로 줄인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아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들도 직결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향후 2년 연장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고 박주현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주현 위원 이것이 어쨌든 710억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법인세를 낼만한 중소기업에 보편적으로 나간다는 점에서는…… 법인세를 낼 처지가 안 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법인세를 내야 되는 상태에서는 손금 처리에 600만 원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정도에 한해서는 보편적으로 간다는 점에서 일단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겠는데 이 710억 원만큼 다른 대기업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붙여서 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야지 대기업도 깎아 주고 중소기업도 깎아 주고 다 깎아 주면 나라 공간은 누가 지킵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지요.

지금 박주현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합의하고 그 대신 다른 세수 확보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향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단서를 달고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2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국법인이 30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구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익금에 불산입하고 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취지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의 범위나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와 과세특례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도한 특례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것이 예를 들면 저번에 신문에 났던 부영, 장기임대주택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짓는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그런 회사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과장이 설명해 봐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장 조만희 이것은 내국법인이, 기업이 이런 사업을 하는 펀드나 리츠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설업체들과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면 건설업체 중에서 건설 전문이 아니더라도 재벌 산하에 건설업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하고도 관계가 없나?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대부분의 재벌기업들이 다 건설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것은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되고 그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는데 사실 이런 장기임대주택의 자금 공급원을 넓히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산 서민층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이종구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선 저번에 문제되는 건설업체들이, ‘세금을 좀 깎아 줄 테니까’라든지 하여튼 세금에 대한 딜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무슨 말썽이, 스캔들 비슷하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에 임대주택 같은 것을 짓는 업체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아마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장기임대주택이 뭐냐 하면 300호 이상에다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취득 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에 15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주택……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회사들도…… 지금 이런 것들도 다 예를 들면 중소 건설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주택 같은 것 작은 평수들도 지금 소위 재벌기업 또 재벌기업에 버금가게 돈을 번 건설업체들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해서 결국은 과도한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염려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챙겨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이 혜택 자체가 과도해요. 여기 보면 100% 익금 불산입, 양도차익 중 일정 금액 손금 산입, 상당히 세잖아요. 그리고 이것 지금 신설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개인들이 간접 투자할 때 현재도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알아보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확인하십시오.

○이종구 위원 특히 신설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중해야 된다고, 조세감면 철폐하고 그렇게 하겠다면서 이런 것을 새롭게 갖고 오면서……

지난번에 우리 회의할 때 문화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그것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신설하는 것은 확실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익을 받는가, 어떤 건설업체들이 이익을 받는가 이런 것을 명쾌하게 해야 그 신설하는 데 대한 어떤 합의가 있는 것이지.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아까 비슷한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부자가 예를 들면 30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그 회사에 자기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배당금도 면제해 주고 나중에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손금해 주고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 그게 똑같은 문제인 것이지요. 부동산 부자들이 이것을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어떤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 문제가 이렇게 한번 계속하기 시작하면 스포일드됩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 땅 사 가지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구멍이 어디 있나 이것만 찾아보고 다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멍이 없으면 앞으로 절대로 그것을 팔거나 투자하지 않고 버티고, 그러면서 정말 뒤에서 밀리고 이런 상황

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조는 좀 바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만연히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 스포일드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하는 게, 예를 들면 15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다주택자가 바로 이것을……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팔고 하는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안 하거든요. 보유하지요. 5년이든 10년이든 자기가 보유하면서, 내가 집을 3채 갖고 있으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집 살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한 채 외에는 결국은 임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를 5년 한다, 10년 한다는 조건이 마치 무슨 엄청난 조건인 것처럼, 규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전혀 규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은 그것을 한 꺼풀만 벗기면 완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제를 여기에 붙이지 않으면 정말 민간임대주택에서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 데는, 지금 현재 있는 유의미한 규제는 오로지 월세를 한 번 인상할 때 5% 이상을 넘을 수 없다 그 규제 외에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가지고 그것을 지을 때 또 보유하는 과정에서 또 나중에 팔 때 등등 이렇게 앞뒤로 이런 엄청난 혜택을 줄 거냐에 대해서 저는 매우 회의적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든…… 그러니까 지을 때, 보유할 때, 팔 때 등등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혜택이 적절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한 말씀 올리면 어차피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이 지금은 공공임대 중심으로 돼 있고 민간임대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장기, 그다음에 기업형 임대 같은 것이 활성화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에 중심을 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시장 자체는 수요·공급이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돼야 될 정도의 기반 형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최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임대시장은 공공임대의 비중이 커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의 거주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업자들은 결국 거주자들로부터 다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낮춰 줄 수 있다는 확실한 장치가 있다면 몰라도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재협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소위 심사자료 Ⅲ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접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Ⅲ권의 129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뒤에 붙은 것 아니고요?

○전문위원 조의섭 예, Ⅲ권.

정부안 말고요.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1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림 의원안은 2016년 6월 30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에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이찬열 의원안은 2016년 7월 31일 현재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저공해 승용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혜택은 신차의 개별소비세액을 70% 감면하는 내용이고요.

적용기한은 김광림 의원안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찬열 의원안은 2016년 8월 1일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노후 경유자동차를 중고차로 매매할 때보다 폐차 후 신차로 교체할 때 적용되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유인이 적을 수 있어서 조기폐차지원금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또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물품가격의 5%로 준중형승용차의 경우는 판매가격이 낮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액 70% 감면이 인센티브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찬열 의원안의 저공해 승용자동차에 한해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현재 인준 받은 승용자동차 252종 중에 시판 중인 차종은 44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차 구매자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이찬열 의원안은 저공해 승용차 중 LPG 차량의 일반인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취지는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이고요.

지금 김광림 의원님 안하고 이찬열 의원님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두 의원님 안 가운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김광림 의원님 안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용 대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할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차량 교체 효과가 축소되는데 지금은 신형 경유차로만 교체하더라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90%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은 단기간 정도가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용기간이 너무 길면 조속한 교체 촉진을 위한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LPG 사용 제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법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원 실시 시점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통상 자동차 구매가 많은 11~12월 중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의결일 또는 12월 1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2월 판매 증진 효과라든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한 17년 6월 말까지 정도로 하고, 차량 교체 사유도 수출의 사유로 말소 등록하는 경우도 적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해 가지고 미세먼지 줄이고 하는 방향은 맞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미세먼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중의 하나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 하겠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데 하여튼 나는 김광림 의원안이 됐든 이찬열 의원안이 됐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복잡한 것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복잡하게 자꾸 만드는 것은 항상 뭔가 야로가 있어. 그래서 하여튼 말소 등록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것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게 뭔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가 양비론적으로 이 안도 그렇고 저 안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둘 다 안 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안으로 이런 게 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김광림 의원안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구 위원 아니, 가깝다고 했지 그것이 최선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는 김광림 의원안을 지지합니다.

○이종구 위원 하여튼 뭐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지금 정부 방침 아니야? 깎아 주지 말고 그래야지 제대로 세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 상태도 안 좋은데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서 깎아 주고 말이지. 하여튼 뭔가 좀 이해해.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 이유가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세감이 920억이나 되고요. 그리고 이미 현재 연료별 저공해 승용자동차 인증 현황에 휘발유·경유·LPG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외에 별로, 그러니까 경유자동차의 저공해는 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는 것은 좀 부적절하고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이하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책들은 이미 다 있습니다. 이미 다 있고, 특히 노후차 폐차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수도권에서는 그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더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자는 것은 저는 경기 활성화 내지는 성장률하고 관계가 약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것을 조금 당겨서 팔게 하기 위해서 920억을 쓴다는 것은 정말 반대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주는 어떤 사인이요, 우리가 앞으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고 경유차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피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고차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형제했다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게 되면 오히려 폐차·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각종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세감을 해 주는 것으로 인한 효과가 부정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안은 저희가 올해 6월 28일 날 정부가 그때 할 때 발표를 했던……

○박주현 위원 알아요. 추경할 때 했다가 안 됐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6월 말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해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환경 효과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많이 논의가 돼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봐서 저희가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소비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폐차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주현 위원 아니, 어쨌든 이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친환경차를 뭔가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노후차 폐차하는 것은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은 노후 경유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돈이 없어서 끌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차 뽑으면 세제 혜택을 얼마 준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적고 또 그것을 무리하게 따라가려다가 빚내서 차 사고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게 920억이라는 세감이 나는 것인데 그 노후 경유차를 빨리 팔고 6개월 이내에 새 차를 사게 압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920억을 쓴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그 당시에 파악한 것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해 놓고 오히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발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미세먼지 대책의, 가장 큰 것이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라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었지요?

○박주현 위원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된 것이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다음에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도권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는 그 제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래요, 수도권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이것은 금지시킨 것이지 지원은 없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지원금이라 그래 가지고 원래 수도권에서 하고 있던 것을 금년 추경 때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이라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가지고 금년 추경부터는 전국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얼마씩 지원하나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그것으로 왜 안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다 합해야 됩니

다. 개소세 감면에 폐차지원금……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러니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그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박주현 위원 일단 재논의를 하시지요. 오늘 그것을 결론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조금 더 설명을 해 보시지요.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두 가지……

그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두 가지 발표 났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가 이것인가요? 하나가 이것이고, 하나는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하나는 이것이고,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이게 종합적으로 뭘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이렇게 짚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도 얘기는 나왔지만 별로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소위원장 이현재 계획을 할 때 추가로 안 한다 뭐 한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는 안 하지만 현재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던 것……

○소위원장 이현재 현재 있는 것도 조기 클로즈드한다라고 얘기는 나왔는데……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 짓는 것 여전히 짓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언주 위원님 지적 또 박주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게 미세먼지 대책의 중요한 요인으로 왔는데 지금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석탄화력발전소 문제 또 노후 경유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하는 내용을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보고해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목적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면 그 목적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소비세 절감 줘서 혜택 받는 사람들도 자기가 무슨 혜택 받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좀 싸게 형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한 개편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박광온 의원은 중고 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인상하고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오제세 의원안은 의제매입 특례제도를 폐지하고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마진과세제도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EU 국가…… 우리의 부가가치세율로 볼 때는 마진과세 도입은 체계가 잘 맞지 않고, 마진과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등 징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거래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하여 공제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반면 재활용 폐자원의 경우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공제율 변화가 재활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현행의 공제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현재 공제율을 인하 적용한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지원 효과들을 살펴서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도 저희가 지금 정부안을 냈는데 현행 제도 자체가 재활용 폐

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국회 합의를 통해서 계속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국회에서 공제율을 더 인하한 다음에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라든지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는데 공제를 허용하는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저희는 지금 현행 수준에서 일몰을 연장하는 정도가 제일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고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의 투명성이 낮은 상황인데 부당 과다환급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고품에 대한 마진과세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진과세 도입이라는 게 결국은 납세자의 물건별로 이력관리를 해야 되는 아주 새로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에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사실 논리적으로는 중고품의 경우에는 마진과세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이제 납세협력비용도 굉장히 증가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중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중고시장 자체에 대해서 마진과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고시장에 대해서 중고품이나 골동품 등등에 대해서 마진과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되 지금 현 단계에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율을 낮추느냐 높이느냐 하는 건데 낮춰야 된다는 쪽도 어떤 논리가 있고 높여야 된다는 쪽도 논리가 있어서 저는 현재로서는 정부안에 찬성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가 옳은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꾸 편의 중심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조세정책은 공정해야 되고 또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복잡하고 행정상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과세 대상자들이 부담하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한꺼번에 다 고치기 힘들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태도를 갖고 있을 수 있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보면 다른 중고품은 제가 모르겠지만 자동차라든가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 세액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면서 이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것을 줄일 생각만 한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실제로 거래 관행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투명하지 않으면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지.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마진과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국회 소위에서 많이 논의가 됐고요. 특히 14년 초에 마진과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저희가 특별히 조세소위에서 따로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나라가 주로 EU 쪽인데 저희들이 EU까지 출장 가서 나름 많이 연구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납세협력비용이라든지 행정비용 증가뿐만 아니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손해를 보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언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핵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엽적인 얘기만 계속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게 원래……

○이언주 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박주현 위원 저는 마진과세 얘기했고요. 이언주 위원님은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그러니까 중고상에서 처음에 그것을 구입할 때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니까 의제매

입세액공제제도 자체가……

○이언주 위원 아니, 2개 다 비슷한 얘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마진과세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품별로 다 이력관리를 하기가 힘들면 최소한 우리가 이력관리할 수 있는 품목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도입을 해야지.

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해서 나온 것이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근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진과세제도 혹은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원칙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줄여야 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왜 줄여야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왜냐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 개인들로부터 물건을 살 때거든요. 본인은 부가세를 안 냈거든요. 부가세를 부담 안 했는데 그것을 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원래 10%를 다 공제하다가 1%p를 깎아서 그 부분을……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부가세를 부담을 안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이 공제제도 자체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거래 관행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중고상들이 일반 개인들한테 살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를 중고상들한테 팔잖아요.

○이언주 위원 아니, 당연히. 공제제도가 없는데 무슨 일반 개인들한테 살 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109분의 9를 공제해 준다니까요.

원래 사업자끼리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데 중고상들이 일반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사잖아요. 그때 부가세를 본인이 부담 안 하지 않습니까?

○이언주 위원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안 하지만 109분의 9를 공제해 주고 있다니까요.

○이언주 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거래 단계들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반 다른 상거래하고.

부가세라고 딱 해 가지고 원래 부가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떼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러니까 부가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언주 위원 그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 말이 맞지 않아요? 부가세 항목이 있는데 떼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부가세라는 게 거래 단계마다 매입세액, 매출세액 쪽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제도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마진과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가세를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공제를 해 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 하나 뜯어봐서 이게 원칙에 맞게……

그리고 실제 거래 관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그걸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들이 부가세를 부담할 때도 그 총액으로 해 가지고 거래에서 그 가격으로 정상가격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부가세가 이렇게 명확하게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하는 거고 어떤 것은 그런 자체가 거래 관행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을 뿐인 것이지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물론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건 없겠지.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른 거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래 관행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 한 번도 부담한 적이 없지요, 그렇게 제도가 설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마진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원칙대로 가려고 해야지, 우리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게 마진과세를 하기에 행정 편의적으로 어렵다, 너무너무 복잡하다 이런 지엽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자꾸 매번, 매년 그냥 넘어가기만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중고차를 매각하는 개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게 아닙니다.

○박광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이 제도가 뭐냐 하면요……

○박광온 위원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게, 세금계산서를 개인이 발행하지 못하지만 개인이 매각할 때 세금을 내게 되면 정확하게 판매가격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 이력관리가 되지요. 중고상이 그것을 살 때 얼마에 샀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진과세가 어려울 이유가 없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마진과세를 하려면 차 하나하나마다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언주 위원 하면 되지.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하게 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게 되면 개인이 중고차를 매각할 때, 개인이 신차를 살 때는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매각할 때는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완하면 저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세제실장 말이지요, 폐지가 1kg에 얼마 하는지 아세요?

폐지가 1kg에 70원 한다고, 70원.

70원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

신데 노인분들이 한 100kg 모으면 그게 7000원 아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리어카에 싣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눈물이 난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뭔가……

중고차는 지금 109분의 9이고 재활용 폐자원이 103분의 3인데 나는 이것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재활용 폐자원이 더 적은가, 3밖에 안 되고 이쪽은 9인가……

첫째, 내 생각에 이것이 거의 같이 갔으면 좋겠고, 10까지 가면 지금 부가세 세율이 10%니까 그건 무리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9까지 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세 감면으로 인한 이익이 예를 들면 폐휴지를 수집해 오는 분들한테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을 하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폐자원 수집하는 그 회사들한테? 그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조금 더, 예를 들면 지금 100kg 7000원인데 7000원이 아니라 한 1만 원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식으로 장치를 만들면서 이것을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예요.

그리고 정부안에 대해서는 기한 늘리는 것은 찬성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재논의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잠깐, 하나만 질문……

○소위원장 이현재 예,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근본적으로 정부가 좀 고민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생산자 이력을 추적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공산품,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처음에 일차적으로 자동차 회사에서 구입을 할 것 아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구입을 할 때 부가세를 상당히 내고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가 쓰다가 중고매매상한테 주로 팔 텐데 그러면 그때 그 소비자는 자기가 부가세를 굉장히 많이 내고, 그것을 포함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샀는데 나중에 팔 때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가 소비자한테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매매상한테 가겠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궁극적인 게 아니고 매매상한테 적용되는……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소비자가 그냥 이 거래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어진 거래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시차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어진 거래라고 생각하면 이 경우에 공제해 주는 게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통 다른 거래 같으면, 그렇지요? 보통 다른 상거래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보세요. 신분이 매매상이고 소비자이고 이 사이에 몇 년의 시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 거래만 짚 보면 이 단계에서 공제를 안 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언주 위원 단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 관행 자체가 세금을 내고 안 내고, 가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의심이 되고 입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서 대충 얼렁뚱땅 때려 가지고 공제할 때 의제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 거지요.

그리고 중고 자동차도 이제 이력관리 제대로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거래를 단편적으로 보시지 말고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공제해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 정도 하시고 재논의하지요.

○박광온 위원 제가 이걸 높이자고 한 건, 매출세액은 110분의 10 아니에요? 그런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109분의 9로 해 놓으면 매출세액률보다 그걸 적게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건 뭐냐 하면 계속 하는 이야기지만……

○박광온 위원 알았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 게 있습니다.

다.

○소위원장 이현재 검토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심사자료 III-1, 정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III-1의 24페이지, 액상형 분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현행은 분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액상형 분류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액상 조제유는 분말형 분류와 비교 시 성분, 제조과정, 사용처가 동일한 재화이므로 동일한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5페이지입니다.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 신설입니다.

현행 개정안은 금·구리·철 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 시에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리·철 스크랩은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만 금 스크랩의 경우 별도의 전용계좌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래되는 품목이 구리·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혼합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납세협력 부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합리화하는 거지요,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시면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6페이지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창 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후원사 및 올림픽 방송

제작사 등이 제공받는 음식, 숙박, 광고, 전력,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외국 사업자가 음식, 숙박, 광고, 전력, 통신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았을 때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는데 동 내용은 IOC 측 요구에 따라서 올림픽 참가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방송중계와 관련돼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만 예전의 외국 예를 볼 때 소치 동계올림픽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올림픽 관련자가 받은 모든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바가 있고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는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급해 준 반면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이게 관례적으로 해야만 되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걸 지금 IOC(국제올림픽위원회)하고 그 후원사들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고요. 보시면 소치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런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런던은 환급 범위가 사업 관련된 모든 재화·용역이기 때문에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IOC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가 제일 합리적이다, 물론 더 많은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결론이 이 정도로 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걸 국제대회 관련해서 IOC를 준용하는 거니까 그대로……

○金光琳 위원 세수감은 얼마나 돼요?

○박주현 위원 추정 곤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 돼요?

○金光琳 위원 몇백억 되고 이런 건가?

○박주현 위원 그 정도는 아니겠지요.

○金光琳 위원 100억 미만인가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걸 이렇게 하시지요.

합의하고 나중에 세액은 참고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현행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9개월 연장해서 17년 말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동 특례가 2016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던 것인데 일단 3월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9개월 연장해서 17년 말까지 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이건 정부가 내신 건가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정부안이에요.

○이언주 위원 이것 왜 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 제도가 도입된 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환자 유치 이런 측면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이언주 위원 투명성? 어떻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신고 절차라든지 이런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노출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브로커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언주 위원 그런데 그 투명성을 높이는 게 꼭 환급제도를 가지고 높이도록 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적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행해 보니까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 등 이런 것들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여론들이 있고요. 그런 의견 수렴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적용기한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언주 위원 취지를 설명하시는데요. 투명성을 높여야 되는 시장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거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부가세 환급을 통해서 투명성을 높입니까? 이게 형평에 어긋나고요.

그다음에 이 부가세 환급 혜택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미용성형이라는 게 사실 별로 육성·촉진 안 해도 돼요. 이 부라는 것이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쓰여지지도 않고요, 전반적인 국민들한테 혜택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 이제 하시지 마시고, 복잡하게 이런 거 환급한다고 행정 낭비하시지 마시고 투명성 높이려면 다른 수단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환급해 가지고 투명성 높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논의를 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걸 생각해 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정부도 이런 거 궁리한다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사후면세점에서 이렇게 서비스 관련된 부가세 환급해 주는 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후면세점이나 관련……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어떤 게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관세법상 말하는 시내면세점뿐만 아니고 부가세법상의……

○박주현 위원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사후면세점을 통해서 이렇게 부가세 환급을 해 주잖아요. 서비스에 대해서 사후면세해 주는 게 이것 말고 있나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서비스는 미용 이겁니다.

○박주현 위원 이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혜택을 보는 게 너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것 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라서 액수 얼마 안 되는 거 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류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한참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서 세금을 걷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걸 7개월, 9개월 이렇게 연장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만 저희 취지가 이게 투명

성을 높인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는 위원님들마다 다르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의 미용성형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국내 한국 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았었는데 가장 크게 지적되는 것이 이게 투명하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브로커들이 끼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행정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의료관광 전체에 대한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면 당장 이것에 대한 혜택을 보는 건 외국인 관광객이지만 결국은 우리 의료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다는 목표로 이 제도를 도입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시행을 해 보니까 평가가 괜찮아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면서 시행을 좀 더 연장해 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런데 행정을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투명하게 이렇게 안 되면 처벌을 대폭 강화해 가지고 아주 일제단속을 하십시오, 행정에 투자를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원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미용성형에만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미용성형은 부가세를, 제가 지난 번에 국회에 있을 때 18대 때 이걸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했어요. 이것하고 펫(동물) 이렇게 했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때도 이걸 반대했다고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 왜 그랬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부자들이 하는 걸로 안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형을 부자들

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박주현 위원 부가세는 부자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형을, 그래서 이것도……

○이연주 위원 아니, 그런데 치료 목적의 성형은 급여화돼 있어요.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용 목적의 성형을 대개 부자들만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자들보다도 어렵게 사시는 서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행위로 봐야 된다. 성형이 의료행위지 그러면……

○박주현 위원 어쨌든 외국인 관광객들……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의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또 치료 목적의 성형이냐 미용성형이냐를 구별하지 말고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이에요.

○이연주 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만 더요.

이종구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논의는 기본적으로 급여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그 논의를 하려면 의료 분야, 보건 분야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세를 부과할 거냐 말 거냐, 거기까지 논의가 끝났으면 이것의 환급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부과해 놓고 또 환급을 해 주고, 일단 내용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절하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이해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떠나서 우선 이걸 환급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됐어요.

장난칩니까? 정부가 행정인력이, 행정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원칙을 자꾸 벗어나서 뭐 하나 하려고 또 다른 예외 만들고, 그래서 그 예외의 예외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 이전에 지금 이게 세수효과가 얼마입니까? 이것을 깎아 줘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성형 말씀하셨지만 치료 목적의 성형은 급여화돼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상예요.

그래서 미용 목적의 성형은 부자들이 혜택을 보고 가난한 사람이 혜택 이런 것을 떠나서 필수



적이지 않아요. 필수적이지 않다고요. 안 해도 큰 문제 없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거라고 보고.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환급해 준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할 거면 다른 것도 다 환급해 주지 그러세요? 이걸 말이 안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금년 3월까지 하는 게 언제 도입이 됐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금년 4월부터 합니다, 1년간. 금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합니다.

○金光琳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입된 게 금년 3월이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금년 4월입니다.

○金光琳 위원 이게 도입을 할 때 얘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외국 관광객이라고 하지만 중국 관광객들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하도 암시장같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표를 양성화하자 이런 뜻에서 한시적으로 한번 도입해 보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니까 무슨 세금을 비과세해 주고 감면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중국 관광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과표 양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실적을…… 통계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해 주고 소득세나 다른 쪽에서 세수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형량을 해 보고…… 그러니까 정부도 조심스럽게 해서 그런지 다른 건 전부 다 2년, 3년 해 오면서 이걸 딱 9개월 해 가지고 왔네요. 한 번 더 통계를 보고 하려고 판단하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감면을 어떻게 해 줬고 다른 세수가 어떻게 과표 양성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하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렇게 하지요. 이걸 재협의하고요.

○박광온 위원 거기다가 불법 브로커 실태 변화가 있는지가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관계된 자료를 정부에서 정리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9페이지입니다.

농협은행이 공급하는 IT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구조개편에 따라 2012년 금융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부문은 IT자산을 자체 보유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적용 유예를 받아서 농협중앙회가 전산조직을 통합·운영한 바가 있습니다만 2014년에 IT 조직을 일괄해서 은행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용역을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제공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농협은행이 중앙회 및 구조개편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대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 2017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단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산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하는 예가 있나요? 단지 이게 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농협·수협에 대해서만 예외를……

○박주현 위원 그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박주현 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거 반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은 어쨌든, 그러니까 단위농협에서 정말 농민들이 출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잖아요. 중앙회는 일반 은행하고 같이 병렬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단위거든요.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일정 부분이 단위농협에 어떤 식으로든지 혜택이 흘러가고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하시면 모르겠는데, 농협과 수협은 어쨌든 정부가 사람도 임명하고 정부가 관장하는 은행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여겨지고 있는데, 정부가 관장하는 은행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데 그 은행이 국책금융을 하는, 그러니까 정책금융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이 신경분리를 하기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IT 조직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문제입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위원님, 그것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신경분리를 2012년부터 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되어서 2017년 2월에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들어

왔던 것은 농협은행이 현재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줬던 것이 IT 조직이 지금 농협은행에 있기 때문에 거꾸로 농협은행에서 경제자회사 쪽으로 다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언이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면제를 못 받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농협 구조조정 기간 동안에 면제를 받도록 해 놓은 건데 IT 조직이 중앙에 있다가 은행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17년이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신경분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이언주 위원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 그러면 그 일환으로 지금 행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때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의했던 내용 안에 이게 들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그때 했는데 이번에 주체가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이 약간 빠져서 보완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못 들었어요. 마이크 해서 다시 설명 좀 제대로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 지금……

○소위원장 이현재 성함하고 직급하고 얘기하고 하세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 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입니다.

동 상황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농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그 와중에 지금 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원래 서비스를 하던 전산용역이 이관되어서, 농협은행이 생기면서 그 서비스의 주체가 농협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똑같이 하는데 구조개편을 하면서 그 기능만 은행에서, 주체가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농협은행이 지금 서비스를 하게 바

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법률 자체도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으로만 주게 되어 있는 걸 서비스 주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구조조정되었던 과정에서 IT 업무가 농협은행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나 새로 생긴 자회사에 전산용역을 제공할 때도 가능하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말씀……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를 부과할 게 아닌데 지금 부가세가 부과되는 바람에 생각했던 그림하고 달리 여러 가지 차질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면제해 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류양훈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김광림 위원님 하시고 박주현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주현 위원 예.

○金光琳 위원 이것은 농협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부 쪽에서 농협이 구조조정을 하도록 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한 20년 가까이 된 사업들인데, 하여튼 ‘이렇게 구조조정하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세금은 한 푼도 안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2011년에서 2014년 중에는 6개 법률에서 23개 항목을 면세·비과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해 주고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것같이 놓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현물출자하는데 부동산 비율을 바꿔 가지고 다른 것 바꾸다 보니까 이게 농협 코를 치게 되는 이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지금 되어 있고 또 현물출자 부동산 비율 관련되는 것은 다음에 또 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농협이 원했다기보다는 그동안 20년 가까이 되어 오면서 이렇게 농협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긴 거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과

정에서 자산 양도도 있고 이럴 텐데 법인세하고 취득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는지, 그러면 그거 한꺼번에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닌가?

○金光琳 위원 그 부분은 또 다음에……

○전문위원 조의섭 그건 별도 법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위원장 이현재 그거 지금 같이 들어가 있나요?

○전문위원 조의섭 IV권에 준비해 왔습니다.

○박주현 위원 한꺼번에 다 같이 갖고 오세요, 한꺼번에 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은 한꺼번에 붙여서 심의를 요청해야 이게 효율적으로 되지요, 그렇지요?

○박주현 위원 묶어서 가져오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그 법안도 심의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의섭 예, 그것은 의원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설명을 묶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야 또 두 번, 세 번 안 하지. 이걸 헛갈리지.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지적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김광림 위원이 설명했듯이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구조 조정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해 주시는데, 다만 함께 논의를 하자는 말씀이니가 정부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하하지요.

○박주현 위원 같이 재논의해서 한꺼번에 제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러지요.

그러면 재논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0페이지입니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입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수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해서 해당 400만 원 해서 2019년 말까지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질문 좀 할게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대당 하이브리드는 100만 원, 전기차는 200만 원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자동차는 400만 원,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이번에 저희들이 전기차를 400만 원으로 한 것은 전기차의 판매가를 고려해 가지고 정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전기차 출고가가 40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감면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 지금 수소차 판매가격은 한 8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판매가를 고려해 가지고 설정한 수준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러면 판매가의 5% 정도로 한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여기는 세율이 5%이기 때문에……

○이언주 위원 그 나머지도 다 5%씩 이렇게 한 건가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실제 그런 걸 다 감안한 숫자입니다.

○이언주 위원 전기차는 4000만 원 정도 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수소차는 8500만 원 정도 하나요.

○이언주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빨리 교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정부가 산자부하고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그냥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다 일괄적으로 5%씩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건지, 그러면 우리 인프라를 이중으로 할 겁니까? 수도 해 주고 전기도 해 주고 다 깔아 주고 다 해 줄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한 인프라들이 서로 다를 텐데. 이게 또 표준화 문제도 있고, 어차피 수소차로 가든 아니면 전기차로 가든 한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정확한 결과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건 어차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단 적어도 연료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이언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시장 동향에 따라서 기업들하고 정부가 같이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소차로 갈지 그런 것은……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이런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데 그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텐데, 지금 친환경자동차의 전 세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른 나라들은 방향을 다 잡아 가지고 표준화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전부 다 조금씩 찢끔찢끔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무슨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뒷북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수소차로 가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에 별로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런데도 조금씩 다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부가 조금만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고 시작을 하다 보면 이게 건잡을 수 없이 가 가지고 나중에 가서 주워 담을 수 없게 돼요. 이런 것 다 생각하시고 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기술 난이도에 따라 기술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기술개발이 좀 덜 된 경우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서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산업부의 종합적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이러한 국가의 방향 또 세계적인 추세를 좀 정리해서 다음 논의 때 설명을 해 주시기로 하지요.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저도 30초만 말씀드리면 아직 방침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뉴트럴하게 이렇게 퍼센티지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언주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미 전기차 시대는

한참 발전해서 뒤로 물러가고 오히려 수소차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가게 하는 효과도 수소자동차가 훨씬 크지요, 전기는 어차피 전기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형이고 우리가 약간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수소차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산업부의 그런 산업발전 방향, 세계적인 추세를 정리해 주시고요.

○이언주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게 일관되게 뭔가 큰 그림에서 방향성이 딱 나오고, 그러면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고 정부의 입장은 뭐고 이것에 따라서 세금감면해 주는 것도 같이 가야지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면……

○소위원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기재부 입장에서는 산업정책 방향이라든지 정책 방향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덜 됐고 부처 요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현 위원 기재부가 하셔야지요.

○金光琳 위원 다음에 산업부 의견 붙여 가지고 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번에 산업부 의견 들어서 하고요.

그러면 재논의하고, 다음으로 가시겠습니다.

간단한 것 3개 남았으니까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1페이지입니다.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연장입니다.

현재 개별소비세 1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는……

○金光琳 위원 이것은 제가 조특법의 개별소비세 부분에 노후 경유차를 내놨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하는 게……

○이언주 위원 아까 다……

○박주현 위원 지나왔어요.

○전문위원 조의섭 이걸 연료니까요.

○金光琳 위원 안 했는데.

○전문위원 조의섭 아까 논의를 했는데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金光琳 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 조의섭 예.

이것은 경형차 연료 저기해 주는 거니까……

○박주현 위원 찬성합니다.

○이언주 위원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러면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요건 완화입니다.

1세대 1주택 여부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 요건에 가액요건과 면적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주택 연면적 한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취지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 주택 연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어촌주택에 대한 구매 부담을 완화해서 농어촌 정착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대지면적요건이 있으니까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저광물.

○전문위원 조의섭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현재 면제되고 있는 관세·부가가치세 만료기간이 16년도 말이기 때문에 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70년도부터 도입돼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에너지자원의 96%를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해저광물에 대한 탐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무슨 성과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부……

○金光琳 위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야지.

(웃음소리)

○박주현 위원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보니까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 기간 동안에 동해-2 가스전에서 생산이 있을 걸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박주현 위원 반대입니다, 어쨌든.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이것은 어떤 제도를 그냥 두고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특정한 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대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누군가가 하여튼 바다 밑을 파고 할 수 있도록 연장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박주현 위원 반대입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실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요.

○소위원장 이현재 됐습니다.

이것은 박주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추가 설명하고 재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위원장님, 조특법 Ⅲ권 본권에 딱 두 꼭지가 남았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심사자료 Ⅲ권입니다.

141페이지 명문장수기업은 지난번에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14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차익거래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차익 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2010년 공모펀드와 연기금, 2013년 우정사업본부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던 것을 과세 전환한 바 있습니다만 과세 전환 이후에 차익거래시장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에 대해서 다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안을 갖고 왔습니다.

다만 우정사업본부뿐 아니라 연기금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계세요?

그러면 다른 의견 안 계시면 합의한 것으로 하고 넘어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연기금을 포함하자는 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본이 원래 국가기관입니다. 원래는 이게 다 대상이었다가 연기금도 빠지고 우본도 빠졌다가 차익거래시장이 너무 외국인 주도로 되다 보니까 지금 우본을 집어넣겠다는 것이고, 우본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연기금까지 넣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 말씀 주십시오.

우정사업본부를 국가기관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합의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농협이나 우체국이 다른 민간은행에 비해서 특별한 취급을 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농협하고 달리 우정사업본부는 법적으로 국가기관입니다. 농협은 국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관입니다.

○박주현 위원 우체국의 금융 기능은 정부에서 떨어져 나간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닙니다. 지금 우

정사업본부 안에 있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1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관세의 세액감면 한도를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분 복귀의 경우에는 현행 한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업계 측에서는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서는 감면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유턴 통계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은 참고로 한 마디 말씀 올리면, 사실은 이것을 대기업까지 확대를 해야 됩니다. 큰 기업들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분위기상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데, 하여튼 모든 나라들이 나간 기업 전부 불러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동의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광온 위원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법인세 깎아 주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나가는 것은.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합의한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심사자료 IV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국회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근거 명확화입니다.

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사유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예산정책처

장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국세기본법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에 개인의 과세정보 보호와 의정활동 수행의 조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의결 시 개별 과세정보 대신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조항이 신설된 바 있고, 2010년에는 상임위원회 의결 시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게 과세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법 내용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의 입법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과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기업의 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 통계자료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국회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국회법상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결국 과세정보의 보호와 의정활동에서 어떤 것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만 그간의 심사결과를 볼 때 어느 정도 절충점이 이루어진 것이 그간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는 현재 자료 제공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국회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까지는 이름을 빼고 직·간접적으로 통계만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지요. 여러 가

지 방법으로 통계에 활용할 수 있으시도록 저희가 가공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제공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이 있으시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개별과세정보까지 제공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 개정안하고 오늘 법안하고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지금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은 85조의6에 있습니다. 81조의13이 개별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조문인데 의원입법안들은 개별과세정보 제공하는 81조의13을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을 넣으면 85조의6과 상충이 된다 이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그동안 논의 결과 개별과세정보는 가급적 비밀을 유지하되 85조의6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는 제공할겠다는 게 85조의6의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제가 핀란드에 있을 때 보면 옆집에 누가 이사 오면 바로 세금증명서 다 떼어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것하고 세금하고 비교해 가지고 차이가 나면 국세청에 바로 신고해요.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로 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것, 개인적인 것 이야 프라이버시지만 물질적인 것, 이런 세금이나 사회관계에 관련된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금융실명법이 금융실명법이 아니라 금융정보 보호법이 되어서, 저는 금융정보라는 것을 개인 비밀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어서……

가능하면 적어도 국회에서 정책 반영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 그 부분을 너무 캡을 씌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송영길 위원 저는 이것에 적극 동의하고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기본적인 공개에 대한 부분은 현

행법에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개정안대로 추가적인 개인의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 만일에 국회에서 그것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국회 논의 와중에 정보가 사실상 공개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도한 정보공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개정안에 다른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아니, 재논의하기 전에……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金光琳 위원 결국은 이렇게 좁혀좁혀 들어가면 개인에 대한 또는 개별 회사에 대한 과세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논의가 좁혀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례대로 소위 한 번 열릴 때마다 조금조금씩 이렇게 전진시켜오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좀 만들어 봐 줘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에서도 한번……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논의하시는 것을 전제……

○소위원장 이현재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위한 담보 제공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에도 담보 제공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납세자의 귀책 사유 없이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있는데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것을 이유로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부도 발생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박광온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안 자체는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상 위기여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조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악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작용이 적은 범위 내에서 한번 대안을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안을 제시하면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의 납세자 전가 금지 및 납부세액 신용공여 허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납부된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4년 신용카드 납부 한도 폐지로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세액의 0.8%, 체크카드의 경우 0.7%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 수수료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며, 수수료 면제 혜택이 납세 규모가 큰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한 국고금 관리법 규정과 상치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지금 지방세가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국세도 해주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의 경우에도 지금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세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국세는 지방세보다 훨씬 세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운용처를 찾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장기 신용공여를 하려면 7개월 이상 장기 신용공여를 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와 원래는 아까 전문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수수료 부담, 비용 부담 원칙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지방세만 아주 예외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운용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총 액수가 1816억?

○박광온 위원 그것은 건수……

○송영길 위원 그러면 수수료 총액이 연 얼마쯤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7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염용수 위원 1300억……

○송영길 위원 1300억?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1300억……

○송영길 위원 그러면 이 1300억을 누가 부담하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은 납세자가 아니면 정부가 부담해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개정안의 취지는 부담하지 말고 그 대신 카드사가……

○송영길 위원 카드사가 안아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신용공여를 함으로써 그것을 보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아서 신용공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운용해서 좀 보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니까 거기도 카드사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들 말씀 안 계신가요?

○박주현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바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것을 운용해서 그 부분으로 손실을 보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지방세의 경우에 이 부분에 굉장히 손해가 많다 그러면 그 내용이 혹시 있으면 좀 주시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거기 보고 판단할 수……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 숫자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 숫자는 좀 확인하고, 이 안건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판단 시점을 체납 발생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국세의 범위를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5억원 이상의 국세로 한정함으로써 확정 방식에 관계없이 소멸시효 판단 시점을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법상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와 부과확정 방식의 국세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법상 납세의무 확정 방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확정 방식의 국세의 경우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되는데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의 판단은 추후 체납 발생일이 되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 기간 동안에는 조세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존치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것에 반대한다는 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계류해서 계

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光琳 위원** 아니, 계류하기 전에 5억 원 이상의 국세하고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5억 원하고 사실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원고 없이 설명 좀 해 줄 사람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통상 5년인데 좀 고액은 10년으로 하자 해 가지고 5억 이상은 10년으로 했는데 현재는 소멸시효 기산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의 기산일을 언제로 판정할 것이냐, 어느 시점에서 5억이냐? 이것은 현재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산일에서 판단하여야 되는데 소멸시효 기산일이 신고 납부기한, 예를 들어 소득세·법인세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 경과 시점에서 5억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신고로 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나중에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그 기산일이 다르니까 그것을 신고 납부를 하든 안 하든 좀 뒤로 같이 맞추자는 것이 의원 입법안의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15년 적용 국제거래 유형 시행령으로의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기본법상 국제거래의 유형을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국제거래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국제거래의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시행령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입법권은 전적으로 행정부에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도 입법 실익

이 제한적이라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들 안 계시면……

○**송영길 위원** 지금 5번 하고 있는 겁니까?

○**金光琳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말로 좀 설명해 보십시오, 알아먹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송영길 위원** 쓴 것 보고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이것 쓴 것 보고 읽지 말고 그냥 알아듣게 말로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기타 부정행위 이런 것을 할 때는 통상 10년입니다. 10년인데, 국제거래를 통한 것은 15년이다 해서 5년을 더 연장을 하는데……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왜 연장을 해 봤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국제거래의 역외탈세에 대한 어떤 과세 강화 차원입니다.

○**송영길 위원** 과세 강화를 위해서 좀 더 기간을 넓혀서, 증거 확보 이런 것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국제거래를 통한 것은 조금 더 부과시기를 늘려서 더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현재 국제거래가 뭐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거래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거래는 국제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는 뭐냐 하면 그것을 더 넓혀라 그리고 시행령에서 해서 정부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넓혀 달라는 것인데……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것이 국제거래지만 실질과세라고 해 가지고 국내거래로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내거래도 국제거래 그대로 해서 15년으로 늘려라,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송영길 위원**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뭐

지요? 왜 이런 거지요? 그렇게 빠져 나간 것이 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마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 사례가 뭐 있었던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런데 큰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전문위원도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나중에 전문위원이 쓸 때 이 법안을 제출한 대표발의자가 뭘 염두에 두고 한 것 인지를 써 줘야지, 이 법이 어떤 현상을 규제하려고…… 규제한 사례가 있었다든지……

○**전문위원 조의섭** 저희가 검토의견에 약간 썼는데요. 그 취지라는 것은 실질상의 국제거래지만 형식상 국제거래가 아닌 그런 거래들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추상적인 거고, 어찌 되었건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이 뭘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팩트를 좀 써 놔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법을 만들 때 그냥 가상의 추상적인 것만 써 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나중에 김현미 의원한테 제출해 보라고 그래요, 어떤 현상을 규제하려고 그런 건지.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김현미 의원, 나는 이것은 받아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통상적인 것을 보면 국회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라고 그러고, 정부는 안 올리려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행령에서 해라, 그런데 아마 ‘등’ 자를 붙여 놓은 것이 범위를 넓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실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정부가 알아서 하도록 재량권을 주되 유형을 좀 더 찾아 가지고 시행령에서 해라 이런 건데, 그것을 굳이 안 하겠다 할 필요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그래요. 시행령으로 내려 주고, ‘등’ 자를 넣어 가지고 좀 더 넓혀 보라 하는 건데, 나는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송영길 위원** 이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찬성해야 되고, 우리 국회 입장에서는 너무 위임을 하

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우리가 부정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데 거꾸로……

○**박주현 위원** 물어보시는 김에 그 앞의 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하면 김현미 의원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확정하기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金光琳 위원** 소멸시효 말이지요?

○**박주현 위원** 예, 그래서 정부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현미 의원님이 왜 이것을 굳이 제출했는지 한 번 더 그 의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확인해서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원장 등의 지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현재보다 상위 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도 상위 기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좀 더 두껍게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은 행정의 자율적 통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기관이 직접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일반적으로는 그 위원회의 소속 행정청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행정심판제도의 취지와 비교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송영길 위원** 지금까지는 누가 했는데요, 임명·위촉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소속 기관장이……

○**박광온 위원** 지금까지는 해당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당해 세무서장이……

○**송영길 위원** 세무서장이 하던 것을 국세청장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먼저 말씀 주시고, 토론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 부분은 행정심판제도라는 것이 행정의 자율 통제, 자기 시정 기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분청 또는 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것이 이 취지에 부합하다는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은 위원님.

○박광은 위원 무슨 취지나 하면 이렇게 되면 이 문제를 납세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처분청 입장에서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자는 취지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도 박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행정심판위원회 자체도 지금 그 위원회 소속 행정청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심판제도의 취지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해 봤는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위원들과 납세자들의 취지를 좀 더 반영하는 제도개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 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부분의 제도 취지에 좀……

○박광은 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따르면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사항, 이것이 주로 국세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더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것은 계류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시지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 아니고 계류요?

○金光琳 위원 아니, 계류 그러면 폐기성 계류이기 때문에 재논의……

○소위원장 이현재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심판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제도 도입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심판원의 인용 결정이 법원 판결 또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세심판원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재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그 조세심판 과정에서 행정부의 세법 해석, 국세행정의 관행 또는 대법원 판결 취지와 좀 다른 심판 결정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처분청은 조세심판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단이 없고, 조세정책 및 국세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납세자 간 조세 형평의 조화를 위해서는 재의요구권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재의요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하급 행정청이 상급 재결기관 결정에 불복하는 결과가 돼서 국가행정조직의 명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당초 조세심판의 독립성 강화라는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를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최대 한 달 반 동안 참고인의 법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국 해당 사항은 대륙법 체계에서 심판청구인에게만 행정소송 제기 등 불복 권한이 부여되고 있고, 처분청에 대해서는 조세심판 결정의 기속력 및 행정소송 원고적격의 부재로 조세심판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우리의 조세소송 및 행정심판 체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세불복제도 개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무위원회에서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법률안 개정 의견이 지금 제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청 및 심판청구인 등의 의견진술권 보장입니다.

재결청으로 하여금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현행법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처분청만 의견 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양 당사자에게 동일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심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심판청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처분청의

의견진술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2015년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진술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기본적으로 앞의 조세심판 결정에 대한 처분청의 재의요구권 신설 부분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현행 심판제도와 어떤 체계의 부조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취지를 살려서 합동회의 심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대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청의 의견진술권 관련된 부분은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우월한 지위에 있는 처분청에게 일반적인 의견진술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저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립 위원님.

○金光琳 위원 이게 문안을 굉장히 어렵게 해놔는데 ‘재의요구가 없는 조세심판관회의 인용결정은 재의요구 기간 경과 후 기속력 발생’, 그러면 재의요구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에 있어서 조세심판원이 심판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국세청이 한 번 더 재의에 부처라 하면 부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내용을 굉장히 어렵게 써놓은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 내는 납세자 편에서 보면 조세심판원에 가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세금 매긴 국세청이 한 번 더 심판해라 이러면 심판하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추경호 의원이 냈는지는 모르지만 추경호 의원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정부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납세자의 의무, 납세자 편의 쪽에서 보면 국세청의 손을 너무 들어 주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김광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이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재의요구를 하

게 한다면 유권해석이나 국세청의 입장과 다른 것은 다 재의요구를 하게 될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하고, 그러나 두 번째, 처분청의 의견진술권 부분은 제가 볼 때 19페이지 말미의 3번에 보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하지 않는데 안 할 때는 처분청도 못 하게 하는 이런 규정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규정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 경우에는 좀 풀어서 처분청도 또 청구인도 누구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지금 조세심판 결정이 처분청 입장에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불복하지요?

○기획재정부제실장 최영록 직접 불복은 못 합니다.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조세 사건이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날아가고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는 혹시 없었을까요? 이렇게 지금 안이 올라왔을 때는 현실에 있어서 국세청이 제대로 방어를 못 해 가지고 조세심판과정에서 세금이 흘러당 날아가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불복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아마 있어서 이런 법안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金光琳 위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지요. 그랬거나 아니면 심판원에 로비를 붙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다시 한 번 더 심판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사례가 없으면 이것은……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지금 박주현 위원님 또 김광립 위원님이 지적하신 큰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는지 문제하고 의견진술의 기회 문제에 있어서는 조정안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 재논의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면 지금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

다고 재결정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 가지고 예외적으로 그런 부분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종구 위원 이게 조세심판원이 재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렇게 간 후에 여러 가지로 참 매끄럽지 못한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세심판원을 둘러싸고. 그래서 차제에 국세청하고 세제실하고 조세심판원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합동회의 같은 것을 한다든지 아까 최 차관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두 번째는 다음 정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인수위 같은 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어느 쪽에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이 조세심판원의 위치를 국무총리실에 놔두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원래대로 환원해 가지고 정보 교환도 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견이 없는 것 같네요.

○소위원장 이현재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재의요구 반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동회의 심의 대상 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대안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런 것을 한다든지……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지금 박주현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이런 큰 문제가 된 사건이 있어서 왜 이런 게 나오게 됐는지 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박주현 위원 확인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불복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하고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

인하인데 이것은 재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임의가입자인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임의가입자로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무소득 배우자가 임의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제공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경비 성격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세제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유인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볼 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임의가입하게 하는 정책적인 유인 수단으로 강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자를 넣는 부분들은 임의가입자를 넣을 경우에 추후에 소득공제를 하면 받는 연금에 과세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그 대상도 사실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라기보다 여유 있는 강남에 세액공제까지 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金光琳 위원 강남이 지역구예요?

○박주현 위원 아닙니다. 저도 강남 살아요. 반대……

○소위원장 이현재 반대하신다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안 계시면 계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여기서는 계류인데 추경호 의원한테는 설명을 하도록……

○소위원장 이현재 기재부 차관께서 추경호 의원님께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6페이지입니다.

난임시술비 특별세액공제 신설입니다.

현재 난임시술비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여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공제대상을 확대하고 난임시술비의 50%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난임시술비용이 1회 180만 원에서 7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실제 지원비용은 4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가 올해 8월에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을 통해서 2017년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향후 난임시술비 부담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난임시술로 인한 금전적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출산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 점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난임시술비 관련된 지원은 저희가 여러 가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라서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을 많이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에 이렇게 특정시술을 집어넣는 것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제가 볼 때도 기왕에 의료비 공제가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혜택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저는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요. 취지가 저출산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들어올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현재 들어올 세금이 감세가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감세를 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정처에서 본 497억 세수감

하는 것은, 난임시술 이것 안 해 버리면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 세수감되는 것과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해서 저는 퍼센티지를 좀 더 줄이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구체적인 공제 대상이나 방식은 조금 연구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받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양육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난임부부들의 애로사항들을 주변에서도 참 많이 들었는데 정부에서 의사만 있다면 이 정도의 유인책 정도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공제방식에서 근로소득자를 넘어서 종합소득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소득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억 5000 정도 한다면 그 이상은 25%, 이하는 50%라든지 기준은 잘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원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문제는 정부에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시고 재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 용역가액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기부금의 범위에 자원봉사와 같은 용역의 가액을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특히 청·장년층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는 그 취지상에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원봉사 용역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 그다음에 자산 기부와 달리 회계처리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용역 제공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

합니다.

○**金光琳 위원** 아니, 검토의견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조의섭** 이게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데……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 의견도 전문위원과 비슷한데 이 부분이……

○**金光琳 위원** 전문위원 의견을 잘 모르겠어요.

○**이혜훈 위원** 예스인가 노인가 모르겠는데요.

○**전문위원 조의섭**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로 할 것인가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용역을 제공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거냐에 대한 방법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훈 위원** 사실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나가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가지지요.

그리고 김관영 의원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 설명할 때 전문위원이 어디에 편향되게 하지 않으려고, 찬과 반을 얘기하니까 찬이 크에도 또 반대가 크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은 있지만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것을 좀 가급적 강조를 해 주세요. 그냥 객관적으로……

○**전문위원 조의섭** 알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재능기부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것은 찬성이거든.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이 왜 한쪽 뿔 들었느냐는 지적이 혹시 있으실까 봐 하다 보니까 이게……

○**金光琳 위원** 설명할 때는 좀 확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설명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부분은 재논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비교과세 도입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이월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했을 때의 세 부담과 일반 과세규정을 적용했을 때 세 부담을 비교해서 세 부담이 높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월과세제도에 따라 오히려 세 부담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 비교되는 세액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부담하는 세액이 증여세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으니까 검토의견을 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과세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6~38%의 누진세율을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과세는 현행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제도의 취지 및 조세 부담 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에 수년간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이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들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이 과제도 계류시켜서 계속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내유보금 운용수익에 대한 법인세 신설입니다.

사내유보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의 성과를 각 경제 주체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마는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고 있는 현행 과세체계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자수익 등에 과세하게 된다면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자산의 보유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자산 운용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보금 축소를 위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내유보금에 대한 별도 과세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이고 외국에도 이런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이것은 반대의견만 썼어요, 전문위원님? 반대의견만 쓰셨어요.

○전문위원 조의섭 개정안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 드렸고요.

○송영길 위원 외국에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그런데 요새 이런 논의들이 있긴 있어요. 법인세 자체를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놀리고 있는, 예를 들면 사내유보금이 됐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오

히려 과세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거든요.

○박광온 위원 투자 유도를 하자는 것이지요.

○이혜훈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일종의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큰 방향에서는 같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혜훈 위원 과세를 안 했는데 투자하지 않고 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과세하는 것이 법인세율 전체를 올리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사내유보금도 법인세를 내고 난 뒤에 쌓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혜훈 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金光琳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꾸 사내유보금이 800조 넘고 832조이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공장, 기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한 현금만 155조예요. 그런데 이 155조에 대해서 투자하거나 월급을 올려 주거나 배당하거나 하는 것을 80%까지 안 하면 10%의 법인세를 추가하는 게 환류세제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봤더니 월급을 올리지도 않고 투자도 별로 안 하면서 배당 해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바꿔 가지고 온 게 월급 올린 것은 150으로 쳐주고, 투자하는 것은 100으로 쳐주고 배당은 80으로 해 주자 하는데 80도 많다, 이것은 없애자는 의견도 나와 있고 확 줄여라 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되면 이것은 좀 계류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지금 개정안의 추가 10% 과세하는 부분들은 자산임대소득, 유가증권처분이익 등 주로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인의 회계에 보면 영업수익 항목들, 특별이익 항목들 이런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산으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주수입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전체 수익 중에서 일부

분만 차지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을 추가 과세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급이자라든지 영업비용에 대해서도 손금 산입을 공평하게 더 해 줘야 되는 이런 논리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과하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때 배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할 때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이 문제는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36페이지는 재논의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협동조합중앙회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과세를 이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가 2012년부터 신·경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7년 1월 1일이 되면 경제사업 부분을 농협경제지주에 현물출자하고 농협법에 의한 사업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법인세법 개정에서 예기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행령상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부동산이 80% 이상인 사업 부문은 독립된 사업 부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경우가 지금 부동산가액이 98.3%에 달했기 때문에 적격현물출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법 개정 당시에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세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세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는 합의사항을 함께 채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합의사항에 비추어 보면 정부나 국회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측면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설명해 주시는데 오전의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농협 구조 개편을 정부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이루어지는 내용도 함께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지금 여기

설명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농협법 개정 당시에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세금은 감면하고 이런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따라 가지고……

○소위원장 이현재 동의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이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사항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 앞부분 것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체계상 부분은 법인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조특법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지방세를 부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조특법하고 조특법을 같이 고치는 게 법체계상 맞고요. 법인세법에다가 특정 법인에 대해서 쓰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취지는 저희가 동감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조특법을 고치고 그다음에 조특법도 같이 고치는 게 사실 저희의 의견인데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결국은 정부가 이런 부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체계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이것을 그냥 전체로 같이 해서 법인세법에서 하는 게 낫지. 조특법에서는 국세 부분 하고, 지방세 부분은 안행위 가서 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金光琳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농협이 쫓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것을 고치다가 세금이 확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농협이 구조 개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인세를 해 주십시오.

○이혜훈 위원 안행위가 도와주겠어요?

○金光琳 위원 법안 아직 내놓지도 않은 것인데.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과세이연을 안 해 주면 농협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을 안 할까요?  
 ○이혜훈 위원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종구 위원 아니야.  
 ○金光琳 위원 쪽 가다가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17년 1월 1일 자로 현물출자를 하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자기들은 못 하겠다 지금……  
 ○이종구 위원 그렇지. 안 하면 못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이종구 위원 못 하면 정부의 신뢰성이 깨진다 그런 얘기지요? 정부는 약속을 한 것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못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종구 위원 세금이 만만치 않아.  
 ○송영길 위원 차관님한테 물어봅시다.  
 왜 정부에서 신경분리를 이렇게 예정보다 빨리 당기는 거예요? 최경환 부총리 때 그런 거예요? 언제 이거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 그것은 아니고……  
 ○金光琳 위원 17년 전부터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물출자는 17년 1월 1일 자로 하게 됩니다.  
 ○송영길 위원 뭐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현물출자 관련인데 이 부분은……  
 ○박광온 위원 신경분리를 추진한 것은 이 정부가 아니지요, 전 정부 때지요.  
 ○이종구 위원 신경분리, 언제 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신경분리를 추진한 것은 오래전입니다.  
 ○이혜훈 위원 MB 때일 걸?  
 ○송영길 위원 중간에 빨리 당긴 게 뭐예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당긴 것은 없습니다. 신경분리는 원래 지난 정부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정부가 일관되게……  
 ○송영길 위원 신경분리가 정확히 몇 년도에 완성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12년입니다.

○송영길 위원 2012년도요? MB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혜훈 위원 MB 말년.  
 ○송영길 위원 그때 부총리 누구였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박재완 장관님입니다.  
 ○송영길 위원 원래 농협에서 했던 프로그램도 4년 당긴 것이지요? 몇 년 당겼던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신경분리를 당긴 것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마 신경분리에 대한 원칙이……  
 ○송영길 위원 아니야, 그때 농협에서 한 일정보다 확 당긴 것이잖아.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당겼어. 당기면서 약속해 준 거야. 박재완 장관 때 약속했었어.  
 ○엄용수 위원 농협은 거부를 했는데 정부가……  
 ○이혜훈 위원 밀어붙였어요.  
 ○엄용수 위원 그래서 농협 쪽에서는, 그때 각종 세제 혜택을 다 해 줄 것이다 약속해 가지고…… 지금 이게 걸리니까 아주…… 보완을 해 줘야 돼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시지요, 정부 장기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훈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합의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식회계 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환급 제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법인세 환급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에 대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측면과 분식회계 억제를 위해서는 분식회계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현행 세법은 일반적인 국세 환급과는 달리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환급에는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반대하

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분식회계로 인한 법인세 환급을 제한해서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분식회계가 드러난 경우에 오히려 법인세 환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납세자를 국가가 보호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측면이고.

넷째,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한 것에 비추어서 분식회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아무리 분식회계라 하더라도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도 해당하므로 반환이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대안으로 분식회계 처리에 대한 불이익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판례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법을 개정하지 못하나? 법 개정하면 대법원 판례가 따라가는 거지. 이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지.

○전문위원 조의섭 그래서 깨자는 거지요. 법을 개정해서 깨는 거라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개정을 해서 깨지는 거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아니, 이것을 해서 깨자는 얘기니까 대법원 판례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혜훈 위원 해서 깨자는 거지. 이것을 하면 대법원 판례가 바뀌는 거지.

○송영길 위원 그렇지요.

○이언주 위원 동의합니다.

○이혜훈 위원 법률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니까 맞겠지.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안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우리 금융실명제나 토지거래실명제에서 명의신탁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않잖아요. 수탁자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으로 끝이잖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하여튼 세금하고 관계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송영길 위원 아니, 좀 들어 보세요.

명의신탁을 막기 위해서 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신탁자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나? 현행은 수탁자 소유로 다 인정해 주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분식회계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하지 말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더라도 기본적으로 조세의 대원칙이 실질과세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남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지만 법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원칙도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과감하게, 최대한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가져오시면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뭐냐 하면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바로 다 돌려줘야 됩니다. 즉시 환급하게 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박주현 위원 환급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

면 이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아니, 이 법안을 이렇게 하면요. 현행 조문이 이것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니까 정부가 안을 적극 검토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과세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고민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으로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회피 목적 법인에 대한 추가 과세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배주주의 지분을 합계가 50% 이상, 부동산임대업 등이 주된 사업,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 지배주주와 관련한 비용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 이상인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15%를 추가로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른바 가족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를 절감하는 방식을 규제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 쪽에서는 개정안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등 세무집행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족회사를 규제하기 위해서 법인세제 자체를 고용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회사의 경우에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인건비를 수입금액과 비교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차량유지비나 접대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용 비중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법인이 일종의 도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 과세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이것도 우병우 사건으로 국민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 있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방식의 탈세를 막아야 된다는 국민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를 최대한 고민해서 안을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이 업종이 대체로 부동산임대업인가요?

○**이혜훈 위원** 그런 부분은 부동산관리회사 이런 것 주로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처럼?

○**박광온 위원** 정강이 뭐였지요? 거기가 임대사업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동산임대업입니다.

○**박광온 위원** 임대업이지요? 여기 직원 한 명도 없잖아요. 직원 한 명도 없는데 이것을 다 손비처리하고 자동차를 이 회사 명의로 몇 대씩 사가지고 하고.

막아야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취지를 반영하는데 과세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하여튼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대를 건너편 상속(대습상속)·증여에 대한 할증률 인상입니다.

대습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서 현재 30% 할증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대를 건너편 상속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할증률을 인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는 경우에 두 세대에 걸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

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할 때와 비교할 때 세금을 긴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 긴 기간의 이익을 향유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일시적 납부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에서 할증률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적정 세대 할증률은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와 생략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차이가 크지 않도록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속세를 운영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서 상속·증여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것은 제가 법안을 내려 그러다가 관뒀는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은 미답지 않은데 손주는 귀여운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바로 손주한테 상속을 하는데, 상속하는 것을 다 인정해 주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손주의 교육비용이라든지 결혼비용이라든지 또 결혼할 때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나는 이 법은 진짜 좀 심한 법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혜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혜훈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아까 OECD나 이런 데서 적정한 할증률을 계산해 놓은 게 있다는데 그것은 몇 %, 몇 %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지금 일본·미국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20% 할증하고 있고요. 미국은 40% 할증합니다.

○이혜훈 위원 그러면 여기 딱 중간이네, 30%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저희들이 원래 30%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논의가 있어 가지고 20세 이하, 미성년자한테 줄 때는 40%로 올렸습

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말씀……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러면 세대를 대습상속으로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상속했을 때에 비해서 차이가 얼마쯤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것을 다 계산해서 지금 이율이 나온 겁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을 30% 하면 똑같이 상쇄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게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하여튼……

○송영길 위원 뭐에 따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시기에 따라 다 달라지고 하니까……

○송영길 위원 시기별로?

대략적으로 30% 하면 대습상속의 이익이 다 흡수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혜훈 위원 상쇄가 된다, 이퀄라이즈된다 이거네요, 오케이.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정부가 아까 답변한 것 중에 지금 현재도 보면 자식한테 주는 것보다 손자녀한테 주면 30% 할증해서 가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노회찬 의원이 50% 올리자는 데 대해서 정부가 ‘다른 OECD 나라에서는 자식이나 손자녀나 같습니다’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내 줘 봐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리고 제가 설명이 하나 부족한 게 대부분 같고 유일하게 지금 몇 개 있는 게 일본의 할증과 세율인데 그게 우리보다 낮다 이겁니다.

○金光琳 위원 우리는 30이고 일본이 20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혜훈 위원 아까 미국이 40%라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미국은 40%입니다만……

○金光琳 위원 미국은 40이고.

○이혜훈 위원 40,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두 나라만 할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두 나라만 할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할증제도가 없고요.

○이혜훈 위원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다 똑같습니다.

○金光琳 위원 예, 똑같이.

○이종구 위원 아까 세제실장 얘기가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다가 다시 손자한테 갈 것 아닙니까, 원래 통상 보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렇게 할 때보다 이게 30%가 높다 그런 얘기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렇습니다. 30%……

○이종구 위원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박주현 위원 아니, 높은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대개 30%로 맞춰서 했다는 겁니다.

○이종구 위원 그렇지. 그것을 맞춰서 했겠지. 그것을 맞춰서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예, 그 이야기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서로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아니, 이것은 재논의가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그대로 가요?

○金光琳 위원 그대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30%를 50%로 가자는 의견들이신가요?

○金光琳 위원 아니, 30% 이렇게.

○박주현 위원 그러니까 계류하느냐 재논의를 하느냐인데……

○이혜훈 위원 계류로 해 놓지요, 대기성 계류.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류하겠습니다.

계류하고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비중 상향조정입니다.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을 현행 11%에서 이찬열 의원안은 20%, 박맹우 의원안은 16%, 김민기 의원안도 16%, 김현미 의원안은 21%, 김진표 의원안은 16%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고자 지방소비세 재원 확대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2014년도 기준으로 국내 총조세 비중, 지방세 비중이 23.1%지만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을

고려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훨씬 크다는 점,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오히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입장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전문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2010년 도입 이후 14년에 전환율 인상을 이미 했고요. 그래서 당초 재원 이전 목표를 지금 추가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의 비중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지방 간의 재정 격차도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제 생각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로 고생하고 있고 자체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 갈 거냐 하는 것에 있어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늘리는 방법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방교부세를 늘리거나 아니면 재정 압박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영유아보육료 등에 대한 매칭 부담비를 없애 주고, 사실 OECD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47%를 비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고 전액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0%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이나 이런 것들은 자격만 주어지면 당연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를 이유도 없고 지역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정책으로 정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건데 거기에 왜 지방자치단체가 매칭을 하는 그런 부담을 해야 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뭔가 가난한 지역일수록 복지 부담이 더 많아서 매칭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가난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좋은 것은 기초연금이나 이런 자격만 갖추어지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칭을 하지 말고 국고 부담으로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줄여 줘야 된다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이 부분은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금 한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해 봤다가 재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이것은 배경을 잘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세,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 대 2이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21%로 올리기로 정부가 이미 약속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올해 정부에서 몇 개 대형 도시들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도에서 이렇게 나눠 주는 세금 부분을 손을 대 가지고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 때문에 지방재정·분권특위를 구성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수원, 용인, 성남, 고양 등 6개 도시가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 지방재정·분권특위가 구성이 됐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위원 잠깐만 제가 발언 좀……

○소위원장 이현재 송영길 위원님.

○송영길 위원 지금 46페이지 지방세 비중 하는 것이지요?

○박광온 위원 예.

○송영길 위원 정부 입장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것은 저도 인천시장을 하면서 얼마나 외쳤던 사안인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쓸 때도 비겁하게 써 왔어요. 뭐라고 써 왔느냐 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오히려 지역 간 재정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것 때문에 상생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세 혜택에서 다시 3000억, 5000억씩 토해 내요, 다. 지방상생기금으로 해 가

지고 다시 농촌지역이나 지방으로 나눠 주고 있다고요. 이런 수도권 이쪽은, 특히 서울 같은 그러니까……

○박주현 위원 수도권만 혜택을 받는 거지요?

○송영길 위원 아니, 수도권은 도로 토해 낸다니까요.

어찌됐든 우리나라 세금의 가장 큰 문제가…… 내가 지자체장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지방세라는 것이 전부 다 자동차등록세하고 담배세하고 나머지는 토지거래세, 등록세, 허가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을 해야 지방세가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는 지방이 난 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로 유인동기가 없다고요. 그나마 지방소득세하고 부가세,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세 지방세분이라 그러지요. 법인세의 10% 오는 것하고 부가세 지방소비세분 이것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이것은 부동산 관련한 것을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엄용수 위원 참고로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1차 타깃이 바로 이겁니다.

○박광온 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엄용수 위원 제일 중요하고……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엄용수 위원 그리고 11% 이것은 기존에 지방세 수입이 있었는데 지방세를 정부에서 낮춰 가지고 보전해 주기 위해서 11%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

○송영길 위원 그래서 2%를 1%로 낮추게 된 거예요, 16%로 해 주겠다는 것은 11%밖에 안 해 주고.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분권특위의 의견을 듣자 하는 것은 찬성이고……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떠냐 하면 중앙정부가 재원을 지방에 주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교부세 19.24%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11%에서 16%로 올리면 5조면 부가가치세 한 60조 잡고 3조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부율 1.5%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중앙정부가 80% 수입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재원으로 보면 이 자료에 나왔듯이 중앙정부가 75%이고 지방정부 세입이 25%밖에



안 되지만 그 돈을 갖다 중앙은 35% 쓰고 지방이 65%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한 쪽만 볼 것이 아니고 세출 쪽의 기능 조정하고 같이 해 가지고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하는 것을 보고 결과를 같이 담는 것이 좋겠고.

5%에서 11%로 올라간 것은 지방세를 줄였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취득세 낮춘 부분을 보태준 것이 6% 된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지방재정·분권특위의 논의사항과 연계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요. 80%를 걷어서 35%만 쓰고 지역에다 나눠 준다는데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다 컨트롤한다는 것이지요. 자주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말 간절한 염원이예요. 지방자치가 지금 지방자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 이것이 중앙정부가 개별 사업마다 ‘이것 해라’, ‘하지 마라’ 컨트롤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교부세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조금도 일괄해서 주는 것이지 오히려 이렇게 하면 행자부에 넘어가지만 지방은 또 행자부에 매이게 되는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75%를 걷어서 35%를 썼다는 그 숫자는 맞고, 만약에 중앙정부가 개별 사업을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방을 컨트롤한다 하면 그것은 고쳐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없을 거예요. 특위에서 한번 잘 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48페이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및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영세율 적용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용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영세율 적용은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이기 때문에 동 제도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설사 영세율을 적용해서 단가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및 수요의 비탄력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격의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은 영세율 도입의 취지 및 소비자 구매부담 완화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보다는 두 상품에 대한 현물지급 등 재정적 지원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는 전문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송영길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이것은 인재근 의원님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 부가가치세제 자체가 형클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출로 지원하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계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 4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회)

○소위원장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난번에 I 권에 있던 관세법하고 세무사법인가 보류했던 것을 먼저 하고 계속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관세법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몇 쪽이에요?

○전문위원 조의섭 심사자료 IV권 103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연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연장 등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공기 부분품 수입 관세에 대해서 관세 면제기간을 4년 연장하여 2020년까지 100% 면세하고 2021년부터 매년 20%씩 감면율을 낮춰 2025년에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견·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 관세에 대한 면세제도에 관해 2013년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하였고, 2015년에 시행을 2년 연기하였다는 점, 특정 산업에 대한 면세는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감면 대상이었던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 축소가 시행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현재 FTA만으로는 관세 감면효과가 낮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18.9%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 가입 및 한·EU, 한·싱가포르 FTA 개정 시까지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이미 4년간 기 유예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업계의 어려움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이미 유예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과 비교의 형평성으로 볼 때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마는 한번 논의를 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지금 이게 관세 면제이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단순히 수입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항공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 관련된 얘기들을 정확하게 상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뒤의 FTA 얘기는 뭔지, 왜냐하면 지금 산자부 얘기가 다르고 국토부 얘기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설명 좀 해 주세요.

○金光琳 위원 정부가 설명할 때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 가지고 혜택을 입는 중견·대기업이 어디인가 하는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설명드리겠습니다.

항공기 부분품은 부분품 자체를 수입하는 것이고 엔진 같은 것을 외국에 들고 나가서 수리해서 가져올 때도 거기서 부분품을 교체하면 그것들 다 관세 감면해 주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FTA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EU의 경우에는 FTA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EU로 가는 것은 지금 이용을 못 하고 또 하나는 FTA 적용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쪽 업계에서 잘 때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게 조금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감면해 주는 방식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정부도 인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저희는 4년을……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지금 원산지증명을 받는 게 어렵고 EU에는 없고 한 것을 정부도 동의하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한 가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협정이 있습니다. 항공협정에 가입을 하면 또 전부 다 감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KAI라고,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항공기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항공협정에 가입을 하게 되면 WTO 보조금 관련 논의가 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항공기 업계에서는 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지금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언주 위원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일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어떤 경쟁 국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경쟁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항공기 부분품 자체에 대한 수입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면 부분품 자체를 수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부분품을 수리한다든지 교체해서 들어올 때 또 관세를 매긴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그것을 감면해 주는……

○이언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감면해 줄지 말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속해서.

그러면 수리하고 교체하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러면 감면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끝낼 것이냐를 판단하려면 우리 항공산업에서 이 관련된 거래의 관행들을 우리 경쟁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관세로 들어오는 어떤 세수 문제가 아니고 그 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국가는 다 감면해 주는데 우리만 안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FTA 얘기를 하는데 어떤 FTA는 이게 면세가 되고 어떤 것은 또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이 부분품의 교체와 수리를 주로 어느 나라에 가서 하는지 그것을 또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물류상의 이유라든가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는 감면해 주는데 EU나 싱가포르라든지 아시아에서는 감면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항공산업들은 물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까운 데서 수리해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괜히 우리만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FTA가 만약에 이렇게 불균형하게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왜 산자부는 FTA를 개정하지 않는지, 개정을 한다면 언제까지 할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개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개정할 때까지만 또 유예해 주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것을 다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국토부나 산자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것 결정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국토부에서 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국토부, 직함하고 성함 얘기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에 근무하는 박주환 사무관입니다.

일단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는데요. 저번에 16일 날 저희 항공정책실장께서 여기 참석해서 발언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가 못 하고 산회가 되는 바람에 말씀 못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항공정책관이 여태까지 쭉 기다리시다가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관련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급히 세종청사로 복귀하는 바람에 현재 담당 과장이 지금 상경하고 있습니다만……

○소위원장 이현재 예, 설명하세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국토부는 일단 의원님께서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업부에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이언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내용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경쟁, 수리……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그동안에 FTA하고 WTO의 어떤 그런 가입을 위해서 산자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했고요. 올해도 5월부터 산업부에 있는 FTA 협력관하고 저희 기재부하고 협력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FTA 개정을 위해서는 추진하되 한 2년에서 4년 정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WTO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런데 현실점에서 그것을 당장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업계 의견같이 가능하면 면제기간을 유예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부처하고 산업부의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는 왜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유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KAI라는 데에서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민간항공기 개발하는 데 보조금

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보조금 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박광온 위원 보조금을 얼마 정도……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30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300억?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예.

그래서 그게 논란이 있어서 사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가입하는 데 좀 주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KAI 때문에 가입을 못 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예.

○박광온 위원 따져봤을 때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그것은 업계에서 계산을……

○이언주 위원 어차피 이걸 두 개가 다른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그리고 EU FTA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산업부에서 EU를 추진하고 있고 15년 12월에 국장급 비공식 협의를 통해서하기로 하고 있는데 이제 FTA라는 게 이 안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비교형량해서 해야 된다는 산업부의 입장이고 한테, 아까 말한 대로 한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이것을 과세를 해야…… EU 측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항공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면세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감면을 줄여 나가면 레버리지로 해서 다른 것을 받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박광온 위원 국토부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일단 FTA 협정이 유효하게 되려면 산업부가 물론 주관이 되어 가지고 협상을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길게는 4년까지 보고 있다고 그러니다.

○박광온 위원 언제까지요?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박주환 4년까지요. 그 정도 기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질문 안 계신가요?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아까 왜 답이 없나요? 80% 혜택 본 기업이 어디냐고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큰 기업 5개라는……

○金光琳 위원 그러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830억 중에 한 700억 정도……

○金光琳 위원 그러니까 득을 보는 건데 KAI 때문에 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을 못 한다는 게 좀 연결이 그거하네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KAI에 주는 300억 없애면 이것은 가입이 되는 건가요? 가입에 대한 문제 해결이 돼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이상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는 그것 때문에 막연히 주저했는데 지금 생각에서는 업계에서는 가입해도 되겠다 이런 입장으로 조금 돌아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金光琳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국토부하고 확인을 해 봐요. KAI에 돈 300억 주는 것 때문에 3600억짜리 세금 깎아 주는 것보다…… 거기 한번 들어가고 300억 안 주고 할 수 있으면, 그것 한번 국방부하고 산업부하고 기재부에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나는 그 설명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전문위원 조의섭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항공업계 쪽 얘기를 들어 봤는데 여기서는 WTO 민간항공기교역협정에 가입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료라는 겁니다. WTO에 가입을 하게 되면 금지보조금에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저쪽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저하고 있었습시다라는 이게 면세 조치가 없어지게 된다면 당장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여태까지 WTO 제소 결과 보면 그런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과 현재 세금감면할 때는 WTO 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단, 그런데 다만 협정에 가입하고 하는 기간들이 최소한 2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까지만이라도 연장을 해 달라……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WTO 가입에 또 한·EU 협정, FTA 협정 이런 등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또 가입할 때는 우리

KAI에 대한 보조금 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은 양날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을 하기도 그렇고 하니깐 이것을 좀 정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국토부는 최대 4년이라는데 4년까지 될지 모르지만 좀 정부에서 대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언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또 박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를 좀 더 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대안 제시하시면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이게 작년에 김관영 의원도 한번 제출했던 건데 이것을 연장을 하되 4년으로 해야 하는지 2년으로 해야 하는지 정부가 이렇게 한번……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 뭐 가입한다 한다 하면서 또 괜히 면세기간만 늘려 놓고 또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부칙을 넣어 놓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경과 규정이라든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산자부에서도 이렇게 또 물어보면 한다고 했다가 또 호지부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좀 답을 찾아와야지, 그렇지요? 이것을 뭐 지금 위원들한테 교통정리를 해 달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법안이나 이런 심의를 할 때 부서별로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 달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협의해 오시고,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WTO에 가입한다고 하는 게 혹시 우리 협상 전략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그건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여하튼 대안을 협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여러 가지 검토

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언주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올리면 이게 원래 재정부서나 조세부처에서는 신중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지난번에 보류됐던 세무사법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몇 페이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심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삭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무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사의 자동 자격 부여는 자격시험 합격자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1961년 제정 시에 들어가 있었으나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대상에 대한 자격 부여는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변호사는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법 3조에 따라서, 저희가 109페이지에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변호사의 세무대리가 가능한 범위, 법률사무에 관한 경우에는 여기서 등록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의해서 허용이 되고요. 사실사무에 관한 것만 지금 빠지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격 부여를 빼지 않으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과 또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것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표에 따라서 법률사무에 관한 것은 계속 영위할 수 있고요, 사실사무에 관해서만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 의견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이언주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제가 항공기 부품 그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격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이익단체들이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법무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익단체한테 막 시달리지 않게요.

이것은 우리가 힘이 센 이익단체 편들어 가지고 해 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심판자들도 아니고, 법무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법무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법무부하고 협의한 것 없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없습니다.

○이언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말이 돼요? 법무부하고 얘기도 안 해 보고…… 이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앞으로 심의를 할 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관련 부처의 정확한 얘기를 듣고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해 가지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 의견을 좀 더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아니, 재협의하는데 이것은 우리 소위에서 여러 번 논의한 거거든요. 수년에 걸쳐서 논의한 것입니다. 회계사회 회장도 와서 얘기했고 또 세무사회 회장도 와서 했고, 또 과거에는 비슷한 게 상임위에서는 통과됐는데 법사위에 가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법무부 의견을 들어라’ 하는 것은 글썽,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법무부 의견을 들어 보시는데, 관련되는 업계 전부 골고루 다 들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 말씀은 법무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법무부와 합의해서 오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법무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에 법무부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를 포함해서 관련 기관 의견을 다 들어서 의견 보고하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50페이지는 이언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인데 이것은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통신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휴대전화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면세 적용은 다른 생필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얘기할 수 없고 면세를 적용하더라도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및 수요의 비탄력성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점, 면세를 허용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다른 재화·용역에 대한 면세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안 계시면 계류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낙찰자 또는 경락자’를 ‘매수인’으로 용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민사집행법은 ‘낙찰자 또는 경락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국세징수법상 매수인은 낙찰자로 선정

된 이후에 매각 결정이 허용된 자를 의미하며, 지금 공매 과정에서 낙찰자와 경락자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유사한 취지에서 매수신고인과 매수인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자칫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원안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위원 낙찰자, 경락자 이외의 매수인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그다음 단계라는 것입니다. 최고액을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매각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매수인의 지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金光琳 위원 같은 사람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매수인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계류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납자료의 제공 사유 추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납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고 채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국세를 채납하고 채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채납 사실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은 국세 채납자의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의 요구 시에 제공함으로써 채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일한 채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채납세액의 납부를 강제하고 국세 채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입니다.

다만 현재 국세청은 매년 고액·상습 채납자의 명단공개제도를 통해 채납액이 3억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를 국세징수법이 아닌 국세기

본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 방향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지금 저희가 명단공개제도하고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03년도에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15년도에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대로 만약에 '500만 원 이상 채납자' 이렇게 되면 87만 명 수준의 채납자 정보, 상당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줄어드는 등 채납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고 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신중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 이혜훈 의원님 안이니까 이것은 그분 계실 때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지요.

그러면 재논의하도록 하고, 이혜훈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 좀 드리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시지요.

○金光琳 위원 아니, '국세징수법 쪽이 아니고 국세기본법으로 가서 해결하라' 하는 것은 내용에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명단공개제도가 국세기본법에 있습니다.

○金光琳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만 하게 되면 거기서 옮기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조의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58페이지도 이혜훈 의원님 발의 법안인데 조금 있다가 할까요, 아니면……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조금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는 재논의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같이 하도록……

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65페이지 배당소득도 재논의하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및 공제 대상 범위 확대 문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인상하고,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5000만 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5000만 원 초과분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면서 창업 후 3년 이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주변을 확대할 수 있는 취지로 보이지만 창업 후 3년 이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직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투자 소득공제율 인상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외의 기업에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해당 소득공제의 일몰이 2017년 말에 도래하므로 그때 제도의 성과 평가 등을 거쳐 공제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일단 적용시기 연장은 그때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득공제율 상향이라든지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해 왔고, 그래서 현재 엔젤투자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로 200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신중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내년에 일몰 평가를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 문제도 추경호 의원님께 설명드리시고, 일단 계류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청년 범위 확대입니다.

현행 70%의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5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른 입법례에서 정책의 종류, 목적 등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과도한 세 감면이나 그럴 우려는 적습니다만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로 한정된 것은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도 있고 OECD 기준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군복무 등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9세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 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지금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낮지만 남자 청년에 대해서는 입직 연령이 제 기억으로 27~28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상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위원님 하시고, 김광림 위원님 하십시오.

○이연주 위원 저도 박주현 위원님하고 같은 취지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정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光琳 위원 다른 법에서 청년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것을 손대면 거기까지 전부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마 경제활동인구 쪽도 다시 봐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을 넓히는 것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런 것을 봐서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박주현 위원 지금 공공기관 취업 지원 대상은 34세이고 청년창업자 연령 기준은 39세이고 어떤 정당은 45세까지 청년으로 하고 있어서요, 현실을 반영해서 좀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정부에서 다른 법에 있는 근거 규정들을 종합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으로 가시지요.

○이언주 위원 잠깐만, 한 말씀만 추가를 하면 용어에 문제가 있으면 용어를 새로 만드시든가 해법을 그때 같이 가지고 오세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7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자가 합병·분할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그 중소기업체가 계속 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을 계속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소득세법 개정에서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이미 현행법에 반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 이미 해결이 된 문제라고 하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계류하고, 김현미 의원님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상향 조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80~10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에 청년 취업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작년 세법 개정 시에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이미

상향 조정하여 올해부터 첫 시행하는 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의 일몰이 2018년 말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감면 확대 여부를 같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적용기한은 2018년 그때 가서 저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감면율은 저희가 2015년 세법 개정에서 여야 합의로 이미 70%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리고 또 초임 임금 수준, 중소기업 취업자를 감안할 때 현행 감면율 70% 수준으로도 대부분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희가 좀 신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님이 내신 것이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박광온 위원 아니,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제가 낸 법안이라고……

(웃음)

이것은 하여튼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어쨌든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고, 대기업 지원에 비하면 중소기업 지원은 참으로 미약해서…… 고용은 중소기업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몰시한이 18년이니까 계류해서 계속 논의를 하지요. 2018년, 아무래도 평가를 해야 하니까.

○박광온 위원 좀 더 빨리 앞당기자는 취지인데, 하여튼……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7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재취업한 날부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시 재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본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업과는 달리 재취업자에 대한 재교육 비용 부담 등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일단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할 경우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광온 의원님께서 내신 이 취지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지금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과도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지를 반영해서 대안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거기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74페이지 밑에? 그러니까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다시 고용한 사업자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재취업한 근로자에게도 이 혜택을 주자고 얘기하느냐면 재취업할 때 그 기업에서 이전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이것을 받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주자는 거예요, 소득세를 줄여서.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도 정부에서 대안 검토해서 재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아니, 이것은 세수감도 연간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8000만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8000만 원 되고 하면 이 취지 자체를 살리면서 작동 가능한지만 확인해 보고 작동 가능하다면 하는 것이지 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저희가 대안을 검토해서……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청년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영록 거기는 세법에 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것은 약간 기준의 이슈이기는 합니다.

○박주현 위원 70%인데 100%까지 올리자는……

○이연주 위원 청년?

아니, 기준 말고 아까 박광온 의원님 내신 것이요.

○박주현 위원 그것은 70%를 100%로 올리자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 부분은 일단 적용기한 자체가 2018년에 끝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그렇게 되고……

○박광온 위원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연주 위원 천천히 하자……

○박광온 위원 그 70%는 작년에 도입이 돼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작년에 이미 70%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연주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이현재 전문위원, 설명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 요건 상향 입법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기준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거주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고,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기준을 현행 3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직선거리 기준을 확대할 경우 자경하지 않는 농지까지 세제 혜택을 줘야 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직선거리 50km로 확대하게 된다면 상시 자경이 가능하지 않은 데도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완화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치 못한 게 현재도 자경농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다투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할 경우에 실제 경자유전의 원칙과도 더 멀어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넓히려고 하면, 완화하려면 공론화가 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저도 같은 취지예요. 자칫하면 이게 자경하면서 도를 넘어가는, 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30km 이것도 계속해서 확대해 온 사항이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이연주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주택을 5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장기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 장기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만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어서 자칫 중복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도 전문위원과 비슷하고요.

현행 세제지원이 의원입법안의 세액공제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기존의 특례도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과세 형평성에 위배되고 재산이 있는 일부 한센인만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 의견에 더해서 지금 대부분의 한센인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혜택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박주현 위원** 잘 모르겠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저는 이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지금 한센인분들 계시는 곳이 원래 옛날부터 터가 전부 명당입니다. 양지바르고 기도 좋고 물이 좋고 한데 이게 지금은 시내 한복판에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시 외곽지로 옮겨가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이종구 위원** 좋네 뭐.

○**이연주 위원** 확인이 좀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언뜻 들으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세금을 내고 팔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건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센인 중에서 정착농원에 거주하는

자가주택 소유자 중에 대부분이 1주택자이기 때문에 현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축사용지도 폐업 목적으로 양도 시 1인당 1650㎡의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고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이 있겠습니까만 다른 장애인이나 상이자, 중증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의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저희가 신중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언주 위원 여기 검토의견 중에서 재산이 있는 일부 한센인만이 대상이라는 점……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게 제 말씀은 대부분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이미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중에서 소수의 다주택자나 축사용지 보유자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때문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렇지, 지금 1가구는 다 면제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실제 한센인 중에 땅 부자들이 많아요, 세금 내고 해야지.

○이언주 위원 그래서 아까 김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은 도심이 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비싼 땅이니까 팔고 외곽으로 나가면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비싸게 팔고 나가서 싼 땅으로 이사 가는데 뭐 그렇게 감면까지 해 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 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센인에 대한 특혜도 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옮겨 주셨으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2년 이상 거주자라고 하지만 이것을 좀 높이더라도, 대부분 한센인들이 한 20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감면율을 100%로 안 하고 퍼센티지를 좀 줄여 놓더라도 촉진될 수 있는, 옮겨갈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이언주 위원 그러면……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하시고 하시기요.

○엄용수 위원 제 생각에는 개별적인, 개인적인 양도 건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옮겨야 될 때 그런 케이스의 이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제가 비슷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못하면 괜히 다른 사람이 사 가지고 권리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대개 집단촌으로 있을 테니까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데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이 있으면 잘 해결될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는 양도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적인 지원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단촌이 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용도변경의 문제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법안 하나를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는 것보다는 굳이 필요하다면 약간의 어떤 감면은 우리가 동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뭔가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지금 이언주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고 김광림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으니까 정부에서는 위원님들 지적을 감안해서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하시고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주승용 의원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소위원장 이현재 예, 주승용 의원님 의견도 들어 보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래서 세법 대안 외에 다른 대안도 있는 것인지……

○소위원장 이현재 예, 종합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꼭 세법을 고쳐야 되는 것인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시기요.

○전문위원 조의섭 79·80페이지는 재논의 조항이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신설입니다.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세제지원은 다른 국제 스포츠행사와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관세 경감을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더해 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면제 및 특구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이게 다른 스포츠행사에 비해 동계올림픽이 인지도가 높은 행사이므로 특구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른 국제행사의 경우와 달리 다른 특례를 인정하게 되면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측면,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인정할 경우에 다른 국제행사에도 동일한 조세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현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각종 특례가 부여돼서 하고 있는 것에 다시 이런 특구에 조세지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특구간 기업유치 경쟁이 심화돼서 기존 세제 혜택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아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도 전문위원과 같이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계올림픽, 그러니까 국제행사 유치 지역을 별도 특구지역으로 해 가지고 세제 혜택을 준 전례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신중해야 될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이게 지금 누가, 정부에서 낸 안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요, 권성동 의원님안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엄용수 위원님.

○엄용수 위원 혹시 지금 개정법안에 따르면 각종 소득세·법인세·취득세·관세의 전체적인 감면·면세를 하자는 얘기인데 혹시나 동계올림픽 준비상의 어떤, 예를 들면 관세와 같이 어떤 특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야만 이게 원활히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분의 의견이나 동계올림픽 관련 준비위원회와 좀 접촉해서 그런 특수한 경우는 답아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면세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방금 엄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아주 제한적이고 구체적이라면 혹시 논의라도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이 상태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는 권성동 의원께 설명드리시고, 그래서 뭔가 정부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안을 제시해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현재는 저희가 이것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권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 나누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리고 나서 그 보고 결과를 여기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다음으로……

○金光琳 위원 82페이지에 다른 대회 때 해 준 예가 있네. 그것도 한번 봐 가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지금 다른 데 해 준 것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추가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것은 다 될 것이고요, 이것 외에 해 달라는 것입니다.

○金光琳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8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내에 장애인 컴퓨터를 설치한 경우 설치 금액의 10%를 해당 건설사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취지는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만 다른 공동주택 복리시설과의 형평성들도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법은 주택법 개정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십시오.

○전문위원 조의섭 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19년 12월 말까지 재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는 기존의 약속어음 중심의 결제 관행이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2013년 제도를 일몰 종료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세법 개정 시에 동 제도와 동일한 목적으로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를 신설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동 제도를 부활하게 된다면 같은 취지의 두 제도가 충돌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일몰 종료가 됐고 2015년도에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제도입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상생결제 시스템 제도 도입 시행 중이고 여기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내실화를 조금 더 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박주현 위원 일용 이걸 봐서는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하는데 김현미 의원님 설명을 듣고 싶긴 해요.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정부에서 김현미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계류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의섭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간을 1년 또는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몰기간이 2년이나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일몰이 되었을 때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정부는 정부안을 냈기 때문에 정부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 연장 부분은 2018년에 일몰 예정이기 때문에 운영성과를 보고 그때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류시켜서 일몰시간 됐을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의섭 9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 발생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충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발생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현충시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현충시설 현황을 볼 때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탑, 비석, 동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 등의 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의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은 세제지원보다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9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또는 신규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현행 3~4% 세액공제해 준 것을 2%p 인상하고 동 특례제도의 기간을 19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현재 동 제도를 통한 감면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이 높은 다른 투자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 제도와 같이 일반적인 투자지원제도는 고용창출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한 투자지원에 비해서는 좀 혜택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동 제도는 설비투자를 실시한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투자 여력이 있는 흑자기업에만 지원하게 되고 오히려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데가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고용증대를 유도할 필요성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찬성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 제도가 일몰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운영성과 등을 확인해서 적용기한 연장 여부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과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박광은 위원님.

○박광은 위원 이게 중소기업 투자를 조금 더 증진하고 고용을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몰기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 이게 공제율을 조금 높이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다른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가 있고 거기에 고용과 연계된 것들이 있으면서 중소기업에 많이 우대를 해 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요건이 없는 부분하고의 어떤 제도상 정합성도 있고요.

박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계류해서 계속 검토하고 그것은 나중에 보고는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金光琳 위원 계류할 때 그냥 계류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 온 원칙 중에 하나가 18년까지 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평가해 보고 하자 뭐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소위원장 이현재 예, 18년 시한이니까 그 일몰 시점에 다시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계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9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등의 정부 업무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해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에 지방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는 2010년 3월에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에 유사기능을 중복으로 수행하는 공사·공단의 통폐합을 권고한 바 있는바, 개정안은 통합된 공사가 통합되기 전에 면제되는 정부

의 대행업무를 수행했던 경우에는 동일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시설관리업무로서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고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게 된다면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이 보고 드렸듯이 지방공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고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 주신 의원님들 안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김두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것 중에서 일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문제는 보니까 어느 지방공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그래서 이것은 다 점검을 해주십시오. 점검해서 이것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검토의견이 좀……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송영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박주현 위원 재논의……

○송영길 위원 다시 논의를 해요?

○金光琳 위원 계류가 아니고……

○박주현 위원 예, 재논의……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그거잖아요. 지방공단이 원래부터 하고 있던 업무인지 아니면 지방공사가 하고 있던 일인지 그것을 잘 갈라 가지고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는냐의 여부를 잘 좀 판단을 하셔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 부분은 김현미 의원님, 김태년 의원님, 우리 상임위시니까 특별히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소위원장 이현재 그래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봐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음 하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9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유기농자재 1366개 중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629개로 46%에 해당되는데 이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공시제품 4903억 중 94%에 해당하는 4610억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유기농자재는 제품 수로 볼 때는 54%에 해당되지만 공급액 기준으로 볼 때 6%에 불과해서 동 유기농자재 생산업체가 매우 영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유기농자재 생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 쪽에서는 비과세·감면 정비 방향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세율 제도를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 유기농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농가와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도 기본적으로 여기 전문위원이 적시한 이런 신중한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김광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시행령에서 저희가 품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그런데 제가 영세율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농촌 현장에 가면 화학비료, 일 반농약은 영세율이에요. 그런데 퇴비를 써 가지고 유기농으로 해 가지고 천연식물 추출하고 식 초, 천일염, 해조류 추출물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세금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계속 넓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기농으로 이렇게 기자재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기존 화학비료, 화학농약을 쓰는 것과 같은 것이 맞춰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품목이 일괄적으로 안 되면 검토를 하셔서 가지고 이 품목 이 품목 이 품목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해서 대안을 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견 대안 제시해서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琳 위원 받아들이는 거고 재논의……

○이종구 위원 그런데 김광림 의원안이 대체토론이라고 써 있네.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金光琳 위원 이것 왜 대체토론이라고 해 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서면질의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논의해 달라고.

○金光琳 위원 서면질의를 한 것을 대체토론 논의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안을 내신 건 아니고?

○金光琳 위원 예.

○소위원장 이현재 이것은 대안 제시를 해 주셔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10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세점 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송객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송객수수료에 대한 자료를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송객수수료를 규제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102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므로 법체계상 관세법이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전문위원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주현 위원 지금 관광진흥법에 규정하는 건지까지를 우리가 어떻게 커버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데. 그리고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난번 관세청 감사할 때 다 공감을 한 사항이어서요.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뭐 말씀 게세요?

○박광온 위원 자료를 제출하게 한 거니까 이견 관광진흥법에 넣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관세청장이 면세점 운영인에게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한 건데 이걸 관광진흥법에다 넣어야 돼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최영록 한도를 두는 겁니다.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일정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 한도를 두는 겁니다.

○박광온 위원 관광진흥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닙니다. 이 제안 자체가 일단 핵심은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박광온 위원 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게 핵심입니다.

○박주현 위원 물론 관광진흥법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지만 일단 면세점에서, 특히 대형 면세점이 이렇게 리베이트로 장벽을 쳐 가지고 사실상 과점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세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박광온 위원 면세점 경쟁적 사업구조 관련법은 이번에 안 냈나요?

○기획재정부관세국제조세정책관 이상율 그건 시행령상……

○박광온 위원 시행령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저희가 그때 같이 패키지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 생각으로는 관세법에 넣는 건 법체계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최영록**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 글로벌 경쟁수단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제한하게 되면 저질 관광이 심화된다는, 음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신규 사업자에게 좀 불리하게, 기존의 독과점 사업자들이 더 유리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주현 위원** 더 유리하게 된다고 보시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세제실장 얘기는 그래도 약간의 효과에 대한 찬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면세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효과를 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이슈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관세법에 들어가는 면세점만 이렇게 하는 것도 법체계상 맞지 않는 측면도 있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그런데 다른 법에서도 좀 보편적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제를 하기도 하지만 또 각각의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에서 또 필요한 규제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관광진흥법에 포괄적으로 해서 이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세점만 따로 해서 못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지난번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면 일단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정부 의견을 정리해서 이 부분은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십시오.

○**전문위원 조의섭**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잠깐만요. 아까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건 관계부처 의견을 들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재논의요? 재논의한다는 건 나중에 한다는 얘기지요?

○**송영길 위원** 이걸 정부 입장이 뭐예요, 항공기 부분품에 대해서? 대기업에 준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당초의 정부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왜냐하면 WTO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협정에 가입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관계부처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은 어렵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부처끼리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고 필요하다면 도대체 얼마 정도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金光琳 위원** 긍정적 재논의로 했어요.

○**송영길 위원** 항공기 MRO사업을 저도 우리 인천시에 관련돼서 했던 사업이어서……

○**소위원장 이현재** 예, 다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1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일원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국세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따르도록 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못 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2013년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하던 지방세를 국세와 과세표준만 공유하는 독립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이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일원화하는 취지는 납세자의 납세협력 부담 및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다르게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결정이나 경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또한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이 추가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침해 등을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취지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현재 안전행정위에 계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지방소득세 개편 취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행자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행자부도 같은 의견이라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좋아요.

○金光琳 위원 송영길 위원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이현재 송영길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송영길 위원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다른 의견들 안 계시면 이걸 합의한 것으로 하겠습니까.

다음 하십시오.

○전문위원 조의섭 마지막 110페이지입니다.

청년세법 제정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청년세법을 제정해서 청년일자리 마련 등……

○박주현 위원 잠깐요. 이렇게 합의해서 하기로 했다고요?

○소위원장 이현재 어느 거요? 지금 한 거요?

○박주현 위원 이것은 지자체에서 엄청 반발할 텐데.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행자부하고 합의를 했답니다. 합의된 거랍니다.

○박주현 위원 행자부하고 지자체는 또 다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에 개정할 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

니까 납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저는 일원화하는 게 어쨌든 납세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넘겨주면서 너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잘 견어봐라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앞으로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이것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의가 됐어요? 행자부하고 합의를 했다고?

○박주현 위원 행자부하고 얘기했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이건 지자체의 의견을 좀 들어 봅시다.

○박주현 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지자체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방세법하고 지방세기본법을 고쳐야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은 약간 보충적인 법이고요. 왜냐하면 실제 지방공무원이 적용할 세법전은 지방세법전이거든요, 국지 조정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방세법이 안행위에 계류돼 있어서 29일 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박주현 위원 이걸 좀 보면서 하지요. 보면서 해요.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계류해 놓고 다시 재논의 한번 합시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걸 재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1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세법 제정법률안입니다.

제정안의 취지는 청년세법을 제정해서 청년일자리 마련 등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지원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의 성격을 가진 청년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안과 같이 청년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청년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청년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1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세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목적세 신설의 적정성과 법인세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정안과 같이 목적세를 신설할 경우에는 동일한 세원인 법인소득에 대해 다른 세목인 청년세가 중복적으로 부과되는 과세구조가 형성돼서 조세체계가 복잡해지는 측면, 그다음에 청년세가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므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법인세법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런데 이걸 왜 공청회나 이런 걸 한 번 안 했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이걸 사실은 저희가 법안 상정한 이후에 제정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또 의장님 법안이고 해서……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의장님 법안이라도 의견 수렴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金光琳 위원 늦게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늦게 들어왔어도요.

○전문위원 조의섭 동일한 취지의 박광온 의원님 아동수당세법도 결국은 같이 했었기 때문에 병합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소위원장 이현재 아니,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 이걸 과급효과나 이런 걸 봐서 해야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본적으로 저희는 법인세를 올리는 효과와 목적세를 신설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청년세 얘기하는 거예요?

○박주현 위원 법인세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저는 이런 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립 위원님.

○金光琳 위원 글썄요, 이걸 결국은 법인세 1%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세는 우리가 방위

세 있었고 교육세 있다가 방위세가 없어지고 교육세가 남아 있는데 이걸 조금 예산편성 쪽을 강조해 가지고 세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세입을 목적세로 다시 가서 칸막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의견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은 계류시키지요.

그리고 전문위원, 우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한 건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도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걸 아까 확인하니까 뒤늦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면 정확하게 진행상황을 알려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종구 위원 아까 제가 자리를 뜬 사이에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삭제는 어떻게 됐어요? 법무부 의견을 들어서 재논의한다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그건 법무부와 합의한다는 게 아니고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소위원장 이현재 법무부 등 관계기관 의견을 다 들어서.

○이종구 위원 아니, 그런데 법무부 의견은 들으나 마나잖아요. 법무부는 아무래도 변호사 편을 들어서 그럴 텐데……

○소위원장 이현재 그래서 법무부 등을 포함해서……

○이종구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통과시키면 어차피 법사위에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사위에서도 막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지 뭘.

○金光琳 위원 전에도 법사위에 가서 반대해서 잡혀 가지고 그랬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 아까 이언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법무부에 한번 물어보고 다시 저희가……

○소위원장 이현재 법무부와 합의한다는 건 아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합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법무부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보고해서 재논의한다는 얘기입니다.

○**金光琳 위원** 그래서 세무사회 의견도 다시 들어 보고.

○**전문위원 조의섭** 아까 하다가 이혜훈 의원 것 하나를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걸 마저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예, 그것 하시지요.  
몇 페이지지요?

○**전문위원 조의섭** 58페이지입니다.

수입물품 압류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세 체납자의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세의 경우에는 체납명단 공개자가 고가의 휴대품을 소지하더라도 세관장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압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세관장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을 위한 권한을 위탁한다면 고가의 물품을 소지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통관 보류 등을 통해 체납정리를 강제할 수 있어서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기대됩니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에 압류, 통관 등을 실시해야 되므로 행정비용이 다소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저희가 국세청하고 관세청하고 실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집행 가능한지를 점검을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계신가요?

○**이종구 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현재** 김광림 위원님.

○**金光琳 위원**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뒤쪽의 '다만' 하는 그것만 제외하고 문구를 하나 만들어 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 관세청과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이것은 국세청과 관

세청과 정부가 협의해서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잘 협조해 주셔서 일회독이 끝났는데 앞으로 다음 주까지 이것을 정리해서 완결을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좀 더 속도를 내서 계속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제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현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제 매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이현재** 그것은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준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주현 위원** 정책소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월·수·금 열리는 것인가요?

○**소위원장 이현재**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감안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면 회의시간을 더 늘리든지, 잡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은 지금 예산하고 바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이후로 늦추고, 저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적어도 11월 한 달은 매일같이 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벌써 20일이 됐는데 시작 자체가 중순부터 시작되고 또 월·수·금으로 계속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서……

○**소위원장 이현재** 재정소위하고 협의해서 여하튼 우리 조세소위가 전체 일정이 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金光琳 위원** 의사진행을 짧게……

재논의할 때는 우리가 정부 측에 요청해 놓은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펴 가면서 몇 페이지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요약본으로 별도로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조의섭** 예, 별도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현재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

○출석 위원(10인)

|       |       |       |       |
|-------|-------|-------|-------|
| 김 광 립 | 박 광 온 | 박 영 선 | 박 주 현 |
| 송 영 길 | 엄 용 수 | 이 언 주 | 이 종 구 |
| 이 현 재 | 이 혜 훈 |       |       |

○출석 전문위원

|         |       |
|---------|-------|
| 전 문 위 원 | 조 의 섭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       |
|-----------|-------|
| 기획재정부     |       |
| 제 1 차 관   | 최 상 목 |
| 세 제 실 장   | 최 영 록 |
| 조세총괄정책관   | 안 택 순 |
| 소득법인세정책관  | 임 재 현 |
| 재산소비세정책관  | 이 상 원 |
| 관세국제조세정책관 | 이 상 율 |
| 국 토 교 통 부 | 박 주 환 |
| 첨단항공과사무관  |       |